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8. 12.

제 출 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

한국조달연구원장 이태원

연구책임자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상 훈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희 택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김 혜 민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김 주 원

목 차

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3. 연구 수행체계	5
2장.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현황분석	7
2.1.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실적현황 종합분석	7
2.2.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경로 분석	11
2.3.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이행실태 조사	29
2.4. 소 결	46
3장.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기관평가 현황분석	58
3.1.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현황	58
3.2.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개선 시사점 도출	63
3.3. 소 결	65
4장.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67
4.1.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67
4.2. 소 결	91
5장. 결 론	93
5.1. 연구결과	93
5.2. 향후 연구방향	101
[붙임 1]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설문지	104
[붙임 2] 공공기관 대상 실태조사 설문지	112

표 차례

[표 1]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실적 현황	7
[표 2]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목표 비율 및 공급실적 현황(2017년)	8
[표 3] 주요 우선구매제도 지원대상 기업별 업체당 평균 공급규모 변화추세	9
[표 4] 연도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9
[표 5]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급실적 현황	10
[표 6] 사회적기업 인증 및 나라장터 등록 현황	10
[표 7] 수요기관 유형별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현황	11
[표 8] 구매경로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 현황	12
[표 9] 계약방법별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참여현황	13
[표 10] 조달대상별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참여현황	14
[표 11] 사회적기업 공공조달 참여현황 상세분석(1)	15
[표 12] 사회적기업 공공조달 참여현황 상세분석(2)	15
[표 13] 계약방법별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참여현황	16
[표 14] 조달대상별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참여현황	17
[표 15] 사회적협동조합 공공조달 참여현황 상세분석(1)	18
[표 16] 사회적협동조합 공공조달 참여현황 상세분석(2)	18
[표 17]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및 용역 공공조달 실적 현황	20
[표 18]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현황	22
[표 19]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의계약 현황	23
[표 20] 사회적기업의 주요 공급 물품	23
[표 21] 사회적기업의 주요 공급 용역	24
[표 22]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공급 물품	26
[표 23]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공급 용역	27
[표 24]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자격 중복 현황	28
[표 25] 공공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활용 현황	58
[표 26] 기타 공공기관 평가지표 현황	61
[표 27]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활용 시사점	64
[표 28]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조달 우선구매 실태	67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추진배경 및 개요	2
[그림 2] 연구 수행내용 및 예상 산출물	5
[그림 3] 연구수행 체계 및 진행방법	6
[그림 4]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1	30
[그림 5]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2	30
[그림 6]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3	31
[그림 7]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4	32
[그림 8]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5	32
[그림 9]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6	33
[그림 10]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7	34
[그림 11]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8	35
[그림 12]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9	35
[그림 13]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10	36
[그림 14]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1	37
[그림 15]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2	38
[그림 16]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3	39
[그림 17]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4	39
[그림 18]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5	40
[그림 19]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6	40
[그림 20]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7	41
[그림 21]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8	42
[그림 22]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9	42
[그림 23]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10	43
[그림 24]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관련 요구/건의 사항	44
[그림 25]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주요 공급 물품 및 서비스	44
[그림 26] 사회적경제기업 수혜 지원사업	45
[그림 27]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지표	62
[그림 28]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평가지표	62
[그림 29]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63
[그림 30]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공급 경로 현황과 개선안	69
[그림 3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계약 및 비계약 활용 특성과 향후 지원방안	71
[그림 32] 사회적경제기업 품질/성능/종합만족도 인식 현황과 개선안	72
[그림 33] 사회적경제기업 공급역량 평가(가칭)체계 구성	74
[그림 34] 복수 우선구매 자격 보유 현황 및 개선안	75

[그림 35] 복수 우선구매 자격 보유 시 실적 인정 할인을 적용방안	76
[그림 36] 우선구매 실적 평가지표 활용현황 및 개선안	78
[그림 37]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표준화 방안	79
[그림 38]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운영현황 및 개선안	80
[그림 39]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목표비율 산정 프로세스 개선	82
[그림 40]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지원 현황 및 개선안	83
[그림 4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급적합도 현황과 개선안	86
[그림 42]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활용 성장전략 현황 및 개선안	88
[그림 43]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공급실적 편중실태와 개선안	89
[그림 44]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참여공유/제한제 개요	90

요 약 문

제1장. 서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관련 평가지표, 정보제공 및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둘째,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창업 및 설립초기 경영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의 기반인 유효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공공조달을 통한 안정적 판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 수행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수행 범위는 첫째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우선구매 현황분석, 둘째, 우선구매 의무대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관평가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적 반영 현황,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구매실적 자료 분석을 통해 수요(주요 수요기관, 물품/용역, 수요량 등) · 공급특성(공급 방법, 공급규모 등) 식별 및 애로점을 파악하고자 함
- 둘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대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관평가 지표 현황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적 기관평가지표 적용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 매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단체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소관 부처별 기관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의 평가지표 활용 여부 및 배점 수준 등의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우선구매 의무대상 공공기관의 현황분석 결과와 시사점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그림 2] 참조).

제2장.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현황분석

-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구매현황과 실태분석을 위하여 정량적 차원에서 2015년~2018년 9월까지의 약 4년간의 공공구매 계약 실적자료를 전수분석 하였다. 또한 정성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의무구매 대상인 832개(2017년 기준)의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사회적기업 2,030개, 사회적협동조합 1,16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함
- 첫째, 정량적 실적분석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경로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이 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이 계약에 의한 방법이 주된 경로였으나 전체공급실적의 약 40%는 입찰 및 계약이외의 민간위탁 등 비계약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
-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 공급경로 중 계약의 방법을 통한 경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등 상대적으로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해 공급한 금액과 건수가 2017년 기준 각각 38,298건(전체의 약 62.3%), 4,324억원(전체의 약 67.3%)으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계약방법 측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7년부터 확인 가능한 개별 수요기관에서 전자입찰이 아닌 단순 소액구매(평균 100만원 이내, 기관 별 최대 500만원 이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한 후 수기거래 내역을 입력한 수기거래 실적이 건수기준 약 30% 수준인 18,127건, 금액기준 약 10.7%인 687억원(이상 2017년도 기준)으로 확인됨
-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2017년 기준 물품이 건수기준 약 78.2%인 47,331건, 금액기준 약 44.5%인 2,8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역의 경우는 건수기준 전체의 약 18.8%인 11,384건, 금액기준 43.1%인 2,770억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건수기준으로는 물품의 비중이 약 80% 가까운 수준이나 금액기준으로는 각

각 57:43 수준으로 비교적 물품 편중 현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효성 분석결과 공급건수는 단순평균값과 중간 값이 약 7배, 금액기준 약 6배로 공급실적 분포의 왜곡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공급실적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104개 업체가 전체 공급실적의 약 68.9%인 4,610억원을 점유하고 하위 50%에 해당하는 518개 업체는 약 2.46%인 165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통해 보다 명확해졌다고 판단됨
- 이러한 공급실적의 과도한 편차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하위 50%기업에게 보다 많은 공급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분석결과 주요한 공급경로는 계약의 방법이 약 46.4%(467억원), 비계약적 방법이 약 53.6%(539억원)로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급경로 비중인 62:38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50:50 수준의 계약 및 비계약적 방법이 활용되는 특징을 보임
- 계약의 방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과 유사하게 경쟁제한적인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을 통해 공급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7년도 건수기준 약 37.1%인 1,418건, 금액기준 약 66.4%인 310억원을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급함
- 계약방법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분석결과와 달리 수기계약에 의한 공급(구매) 방법이 전체 공급실적의 약 56.8%인 2,171건, 금액기준 약 27.8%인 130억원으로 나타난 점이 매우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수 기준 약 26.8%p, 금액기준 17%p 높은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에 있어 수기계약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2017년 기준 물품이 건수기준 약 66.1%인 2,526건건, 금액기준 약 44.5%인 2,8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역의 경우는 건수기준 전체의 약 18.8%인 11,384건, 금액기준 13.7%인 41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 대비 매우 낮은 물품 공급비율인 점을 확인함

- 반면 용역의 경우 건수 기준 약 33.2%인 1,268건, 금액기준 약 85.9%인 401억원으로 사회적기업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공급상품은 용역인 점이 분명히 확인됨
-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이 우선구매 공급을 통해 판로지원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효성 분석결과 공급건수는 단순평균값과 중간 값이 약 3.3배, 금액기준 약 5.3배로 공급실적 분포의 왜곡 역시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상황임이 확인됨
- 사회적경제기업도 2018년 7월 24일 지방계약법률 및 시행령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와 관련해서도 여성기업과 동일한 1인 수의계약금액에 대한 상한선 확대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입찰에서 취약제층 30%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1인 건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함
-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 7월 24일 이후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계약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는 물품기준 약 0.67%인 68건, 용역기준 약 0.95%인 2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인증 사회적기업 수 대비 물품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비중은 3.7%, 용역의 경우는 13.4%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물품기준 전체 계약건수 241건 중 수의계약 건수가 215건으로 약 89.2%를 차지하였으며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는 16건으로 수의계약 중 약 7.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역의 경우는 전체 계약건수 790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446건으로 56.46%를 차지하여 물품 대비 약 33%p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67건으로 전체 수의계약 대비 약 15%로 물품의 2배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2015년 1,822건에서 2018년 9월 현재 2,516건으로 약 694건 증가하였다. 공급되는 주요 물품의 종류는 인쇄물, 교재가 공급건수 기준 1, 2위에 해당하는 공급품목이며 데스크톱컴퓨터, 영상감시장치, 배전반 등이 주력 공급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이외 서적, 달력, 도시락, 현수막, 복사용지 등도 주요 공급

품목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물품의 경우 2015년 15건에서 2018년 9월 현재 205건으로 계약건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급물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복사용지, 기타인쇄물, 교재, 서적, 기념품, 문구류, 화장실용화장지 등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저부가가치 물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한편 용역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2015년 건수기준 3,955건에서 2018년 9월 현재 6,462건으로 약 2,50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연도별 1위~3위 품명은 건물청소서비스,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기타교육서비스이며 이외 기타청소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소독서비스, 인쇄물제작서비스 등이 계약건수와 금액 양 측면에서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2017년 87건에서 2018년 9월 현재 582건으로 약 6.7배 이상 확대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 중 타 우선구매제도의 공급 자격을 보유한 복수 인증자격 보유 사회적기업에 의한 우선구매 공급실적 분석결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자격을 보유한 중복인증 보유업체가 2017년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의 약 10.2%, 금액기준 18.4% 수준으로 확인되어 참여기회를 제한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정성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 및 공급특성을 분석하고 활성화 및 저해요인을 식별하였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의무구매 대상인 공공기관 832개에 대한 1개월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 총 203개 기관으로부터 설문결과를 수집하였다. 주요한 분석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우선구매하는 방법은 입찰 및 계약에 의한 방법이 약 48.5%로 주를 이루었다. 정량적 실적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응답 공공기관 담당자의 약 40.1%는 수기계약으로 관리되는 단순소액구매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 향후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활용한 방법 역시 입찰 및 계약의 방법이 약 52.5%, 소액구매가 37.1%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지원 계획 수립 시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 응답 공공기관의 약 89%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주로 구매하는 단위 입찰

규모는 2천만원 이하로 응답하였고 이는 수의계약 활용 응답비율이 82.2%인 것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 합리적인 가격 26.9%, 복수의 우선구매자격 보유 23.6%, 우수한 품질 18.4%, 사회적가치 구현도 11.9%로 응답함
- 그러나 정량적 분석을 통해 복수 우선구매자격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액기준 비중이 약 20% 수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공급실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유발하는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용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우수한 공급역량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23.6%,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물품 및 서비스 정보 부족 20.3%, 편리한 구매방법 부족 15.3%,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공급역량 부족 12% 등으로 확인됨
- 타 우선구매제도 대비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지는 장점으로는 사회적가치 구현 44.7%,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부정책 기여 24%,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경제적 기여도 16.7%로 나타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공급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성능에 대한 보증체계 26.3%, 수요기관 요구 반영한 수요 적합도 높은 물품 및 서비스 공급 25.3%,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고유하는 물품 및 서비스 공급 16.6%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구매목표비율을 설정 시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전체 응답의 약 74%가 총 구매액의 1%미만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만족도 6.15, 성능만족도 6.12, 종합만족도 6.14점으로 만점인 10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약 3,000개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1개월간 진행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결과 기업의 매출액과 사업성장 기여도에 대한 인식

에서 전체 응답기업의 약 63%가 보통이하로 응답하였고 특히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약 32%인 것으로 나타나 우선구매제도의 유효경쟁력 지원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반면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물품 및 용역 공급이 사회적가치 구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약 59%의 업체가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경제기업 역시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상품의 공급은 입찰 및 계약의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42.9%, 응답자가 속한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타사업 실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로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은 각종 교육서비스, 급식시설운영서비스, 청소/시설물관리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정량적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전략은 전체응답의 약 89%가 공공시장에 기반을 두고 민간시장 등으로 선순환적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 중 타 우선구매제도 자격 중복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14.3%, 장애인기업 10.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6%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급실적 자료분석을 통한 중복수혜 현황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우선구매를 통해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요 이유는 “안정적인 수요 확보로 기업/조합의 지속 가능성 향상” 27.4%, “공공조달시장에 지속적 참여 가능” 22%, “민간시장 대비 높은 공정성/신뢰성 확보” 17.4%, “기업/조합 설립초기 경영안정성 확보” 11% 등으로 조사됨
- 사회적경제기업은 우선구매제도를 “안정적 판로확보로 지속 가능한 경영안정성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약 60% 이상이며 동시에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환경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이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 담당

- 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부족” 24.1%, “기업/조합 설립초기 조달업체 등록 어려움” 15.2%, “공공기관의 보수적 거래관행(검증된 공급업체 선호)” 11%,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절차 정보부족” 10.5% 등으로 식별됨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의 품질만족도 7.22점, 성능만족도 7.01점 및 종합만족도 6.76점으로 평균 약 7.0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품질, 성능, 종합만족도 평점 6.13점 대비 약 0.87점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품질, 성능 등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음

제3장.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기관평가 현황분석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 수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도별 기관평가에 적용되는 평가체계에서 우선구매 달성 수준 등에 따라 평가하는 항목과 배점 및 세부적용기준 등에 대한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정부업무평가, 기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소관부처별 기관평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채택하고 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반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군구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합동평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평가기준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 달성도, 개선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최소 1점에서 7점까지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별 적용되는 평가체계마다 평가항목, 평가산식, 배점 및 평점 방법 등이 상이하여 평가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적정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함

제4장.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실태분석과 공공기관의 기관 평가지표에 대한 활용 현황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9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함
- 첫째, 공공구매 경로별 차별적 구매지원 및 교육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계약방법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계획 및 실행방안과 함께 비계약방법인 민간위탁/공모사업의 참여를 확대 및 유도하기 위한 차등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둘째, 사회적경제기업 공급역량(품질/성능)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한 품질과 성능의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제3자가 인증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급제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공급역량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됨
- 셋째, 복수우선구매자격 사회적경제기업 실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우선구매실적 부풀리기 현상의 해소 및 완화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업 이외 복수의 우선구매자격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단일구매실적을 이중, 삼중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차감하는 할인을 적용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 넷째,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표준화 및 고도화를 통해 평가체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기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달성도에 대한 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실적인정 대상 및 범위, 평가산식 등), 배점 및 평점 등을 표준화하여 단일 평가체계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다섯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의 적정규모 확보를 위한 법정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입법화 추진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제도의 정책적 달성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의 적정공급 규모와 이를 법정구매목표비율 반영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요구됨

- 여섯째,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구매지원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일곱째, 사회적경제기업이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사회적경제 특성에 부합하는 적합도를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현재 기존 공급자와의 경쟁강도가 심하면서 저부가가치 물품 중심보다는 사회적가치 구현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용역 중심으로 공급구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높음
- 여덟째, 사회적경제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통한 “창업/설립 → 판로지원 → 경영/운영 안정성 확보 →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이고 발전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설립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도 자생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의 공급비중을 확대하는 전환적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발전적이고 선순환적인 사회적경제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중의 하나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활용과 관련하여 공급기회의 공유 및 일정비율(매출액 기준 등) 이상의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5장. 결 론

- 본 연구를 통하여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 활용을 위한 주요 공급경로, 계약방법, 공급기회(규모, 금액 등) 등에 대한 정성 및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구매의 종합적인 실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이 도출됨
- 그러나 본 연구의 기본적 목적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한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일부 개선방안의 경우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별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2012년에 접어들어 공공조달 부문에서도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관리체계가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 또한, 2015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동일한 우선구매 관리체계가 도입되면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통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한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
- 창업 및 설립 초기단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및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 세제 및 판로확보 등이 중요하며, 특히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지원은 선순환적 성장 생태계 확보를 위한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주체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선구매 의무대상 공공기관은 각각 2012년(사회적기업), 2015년(사회적협동조합)부터 본격적인 우선구매실적과 계획을 보고 받는 등 사회적경제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우선구매 실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공구매 규모 123.4조원(2017년 말 기준) 대비 0.8% 수준(공공구매 적용 대상 한정 시 약 2%)으로, 내실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사회적경제 단위가 공공조달 시장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처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규모 및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임의구매대상으로 구매목표비율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원 당위성을 넘어서는 환경과 문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보다 구체적으로 공급자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제도적 이해부족, 복수

의 우선구매대상 지원제도와 경쟁, 구매담당자의 적극적 구매노력을 유도할 동인 부족 등 이행력을 저하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정량 및 정성적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정책 및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우선구매 참여현황,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한 관련 평가지표 운영실태 및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제도 등을 평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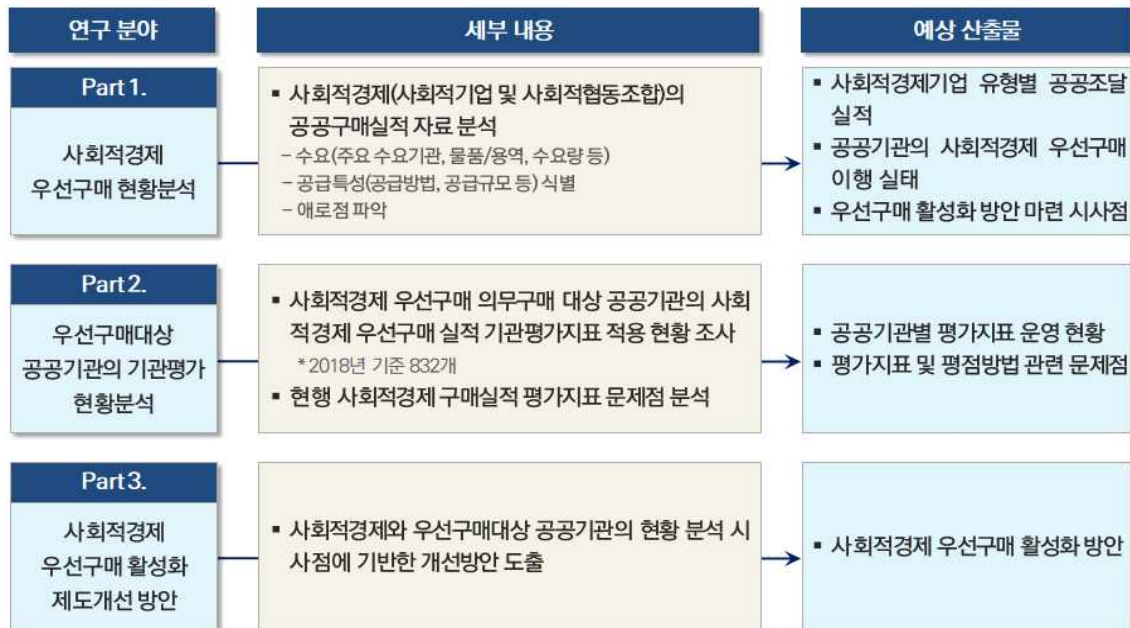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추진배경 및 개요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관련 평가지표, 정보제공 및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 둘째,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창업 및 설립초기 경영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유효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공공조달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수행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지원 대상(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월하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앞서 살펴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수행 범위는 첫째,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며, 둘째, 우선구매 의무대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관평가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적 반영 현황,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그림 2] 참조).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구매실적 자료 분석을 통해 수요(주요 수요기관, 물품/용역, 수요량 등) · 공급특성(공급 방법, 공급규모 등) 식별 및 애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특히 공공기관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대상 물품/용역 구매규모, 구매경로, 수요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전체 공공구매 실적자료가 통합된 조달청 나라장터의 2017년 말 공공조달 계약실적 자료를 기준 자료로 분석하였다.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중 타 우선구매제도 활용자격을(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복수 우선구매 자격)보유한 기업의 실적 규모 분석을 통해 순수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규모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중 복수 법인격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 수준에서 구매실적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수요자로서 공공기관과 공급자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인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식별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의무대상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여 우선구매 이행 과정의 애로 및 개선점을 교차 분석방식으로 식별 및 검증하였다.
- 둘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대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관평가지표 현황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적 기관평가지표 적용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매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단체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소관 부처별 기관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의 평가지표 활용 여부 및 배점 수준 등의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산하 지방공기업 등 포함)에 적용되는 기관평가 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배점 및 전체 비중 등을 실증 분석하였다.
-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을 활용한 기관평가 시 반영 평가항목과 배점 비중 등 평가체계 전반의 적정성 및 문제점 등을 식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평가항목, 산정공식 등을 고려한 평가 실효성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우선구매 의무대상 공공기관의 현황분석 결과와 시사점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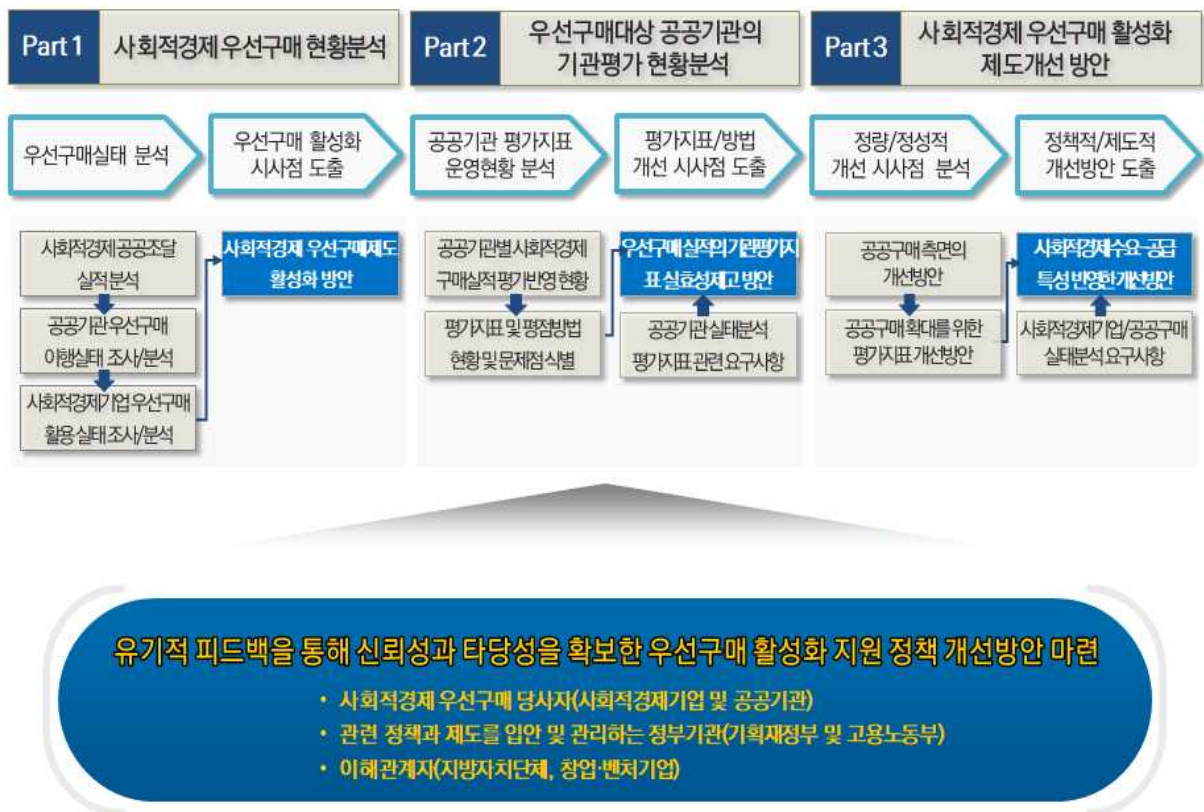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수행내용 및 예상 산출물

1.3. 연구 수행체계

- 연구 수행내용 및 방법에 따라 효과적인 연구 진행을 위하여 본 연구의 수행 체계를 과업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현황을 공공조달 계약실적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그림 3] 참조).
- 2단계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832개 공공기관(2017년 말 기준)에 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연도별 기관평가지표 및 배점 부여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 3단계에서는 1, 2단계의 우선구매실적과 기관평가지표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해 식별된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도적 개방안을 제시하였다.
- 각 단계별 수행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015년~2018년 9월 현재까지의 공공 조달 실적자료 분석을 통해 수요자로서 공공기관의 구매특성과 공급자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급특성을 분석하였다.
- 2단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832개 공공기관을 8

개 유형(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유형별 연도별 기관평가(정부업무평가, 자치단체업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기타공공기관 평가)시 사회적경제 구매실적을 평가항목화하여 활용하는 실태를 분석하였다.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요 및 공급현황과 특성 분석과 공공기관의 기관평가지표의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3] 연구수행 체계 및 진행 방법

2장.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현황분석

2.1.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실적현황 종합분석

-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기업¹⁾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은 연평균 약 30% 수준으로 큰 폭의 양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공공구매(물품+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달성하였다.
- 이는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의 성장은 연평균 약 99% 수준으로,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구매금액에 의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선행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운영체계 유사성을 레버리지로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 또한, 최근 3년간(2015-17년) 연도별 전체 공공조달 참여 등록업체 수 대비 구매 비중을 분석해보면, 전체 공공구매액 중 사회적경제기업이 약 2.3%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실적 현황

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금액 (억원)	비율 (%)	성장률 (%)	금액 (억원)	비율 (%)	성장률 (%)	금액 (억원)	비율 (%)	성장률 (%)
2017	10,466	2.27	30.30	1,006	0.22	59.94	9,460	2.05	27.79
2016	8,032	1.94	29.11	629	0.15	138.26	7,403	1.79	24.27
2015	6,221	1.61	-	264	0.06	-	5,957	1.55	67.80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 한편, 2017년 기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의 임의구매 비중은 2.04% 수준으로 2016년 1.80% 대비 약 0.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1)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함.

[표 2]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목표 비율 및 공급실적 현황(2017년)

우선구매 대상	근거법령	강행성 여부	목표비율	실적금액 (억원)	비율 (%)	소관 부처
중소기업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	총 구매액 대비 50% (전년대비 1.1%p 증가)	922,000	74.8	중소벤처 기업부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의무	총 구매액 대비 1% (전년대비 0.12%p 증가)	5,387	1.01	보건 복지부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무	구매가능 총 구매액 대비 100%(전년대비 3.9%p 증가)	28,456	46.1	환경부
기술개발제품 (NEP·NET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대비 10%(전년대비 1.8%p 증가)	45,000	13.7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기업 생산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의무	총 구매액 대비 1% (전년대비 0.1%p 증가)	15,000	1.2	중소벤처 기업부
여성기업 생산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	총 구매액 물품5%/공사3% (전년대비 0.9%p 증가)	99,000	8.0	중소벤처 기업부
사회적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임의	총 구매액 대비 3%수준 권고 (전년대비 0.24%p 증가)	9,428	2.04	고용 노동부

자료: 각 부처별 우선구매실적 보도자료,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 다만, 지난 3년 간(2014-16년)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예산 및 감사 당국의 관점은 성과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강화 정책 전환 추세였으나, 2017년 새 정부는 사회적경제 영역 우선구매 확대 정책과 의지 표명으로 새로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적경제기업과 유사한 속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연도별 중앙조달 공급금액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유일하게 3자릿수 수준의 223% 규모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표 3] 참조).
- 반면, 전체 고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각각 -6%, -3%씩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 대상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주요 우선구매제도 지원대상 기업별 업체당 평균 공급규모 변화추세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증감률 (‘17-’12)
여성기업(인증기준)	2.26	2.18	2.13	1.99	2.18	2.17	4%
장애인기업	3.06	2.82	2.77	2.14	1.99	1.82	68%
중소기업(중기업)	11.31	10.14	8.59	7.83	7.93	8.99	26%
중소기업(소기업)	3.35	2.68	2.53	2.61	2.79	3.54	-6%
중소기업(소상공인업)	0.92	0.74	0.71	0.69	0.71	0.96	-3%
사회적기업	2.20	2.10	1.48	1.12	0.85	0.68	223%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공공구매 시장으로 진출하는 현상은 2012년 공공기관 실적 및 계획 보고 법제화 이후 가속화되었으며, 2012년 이후 구매실적 측면에서 연평균 38% 수준의 공급확대를 이루었다([표 4] 참조).

[표 4] 연도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연도	총 구매액 [백만원,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백만원, B]	비율[% , B/A]	전년대비 증가율(%)
2012	35,991,782	191,633	0.50	-
2013	38,858,926	263,186	0.68	37.34
2014	37,225,488	355,026	0.95	34.90
2015	38,496,886	595,727	1.55	67.80
2016	41,117,067	740,139	1.80	24.24
2017	46,309,231	942,800	2.04	27.38

자료: 고용노동부(각연도),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우선구매 실적은 2012년 1,916억원 대비 2017년 9,428억원을 기록하며 392%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업체당 평균 공급금액은 2012년 287백만 원 대비 2017년 504백만 원으로 약 76%가 증가하였다([표 5] 참조).
- 동일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수가 180%수준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가 양적인 측면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급실적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우선구매금액(백만원)	191,633	263,186	355,026	595,727	740,139	942,800
사회적기업 수(개)	668	923	1,183	1,465	1,625	1,872
평균공급금액(백만원)	287	285	300	407	55	504

자료: 고용노동부(각연도),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 이러한 실적확대는 2012년 이후 매년 신규 등록되는 사회적기업 증가와도 동일한 추세로, 이는 사회적기업의 실질적인 참여확대에 따른 공공조달 시장 공급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6] 참조).
- 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수 668개 대비 2017년 1,877개로 2.8배 증가하였으며,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업체 수도 618개에서 1,879개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인증기업 수 대비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률이 사실상 100%를 달성하며, 신규 사회적기업이 이내 공공구매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적기업 인증 및 나라장터 등록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나라장터 등록 수(A)	618	667	927	1,217	1,615	1,879
인증기업 수(B)	668	923	1,183	1,465	1,625	1,877
인증기업 증가 수	135	255	260	282	160	247
등록비율(% , A/B)	92.51	72.26	78.36	83.07	99.39	100.30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 공공조달 수요기관 유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가기관은 0.85%로 특별법인을 제외한 가장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는 지역의 고용, 경제 활성화, 특히 지역 내 사회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효익 확대와 연계 등 지역사회단위에서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타 단위 기관별 절대구매비율 및 증가 폭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수요기관 유형별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억원)	비율 (%)	금액 (억원)	비율 (%)	금액 (억원)	비율 (%)	금액 (억원)	비율 (%)	금액 (억원)	비율 (%)	금액 (억원)	비율 (%)
행정 기관	국가 기관	15,889	0.20	20,350	0.25	30,116	0.42	42,443	0.63	50,707	0.66	82,623	0.85
	지방 자치단체	56,849	1.20	88,345	2.22	131,703	3.21	201,749	4.06	245,419	4.85	337,443	6.04
	교육청	17,936	0.40	23,048	0.44	45,325	0.86	65,450	1.26	85,680	1.56	101,802	1.60
공공 기관	공기업	43,069	0.40	60,912	0.53	58,024	0.50	124,792	1.13	170,087	1.51	208,184	1.62
	준정부 기관	37,117	1.00	47,047	1.14	54,493	1.77	80,270	2.11	94,373	2.43	107,314	2.87
	기타 공공기관	10,321	0.30	9,530	0.25	18,124	0.45	54,942	1.12	68,850	1.20	68,409	1.20
	지방 공기업	10,392	0.80	13,350	0.77	16,688	1.01	24,755	1.43	24,265	1.39	31,093	1.57
	지방 의료원	-	-	-	-	-	-	-	-	-	-	4,753	3.64
	특별 법인	60	0.02	602	0.16	549	0.23	1,326	1.25	758	0.31	1,194	0.62
	합계	191,633	0.5	263,186	0.68	355,026	0.95	595,727	1.55	740,139	1.80	942,815	2.04

자료: 고용노동부(각연도),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2.2.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경로 분석

(1)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참여현황 종합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경로는 전체 구매 실적 대비 입찰 및 계약을 통한 계약방법이 62%를 차지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자공모 등 비계약적 방법이 38%로 나타났다([표 8] 참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계약방법을 활용한 공공구매 실적은 2015년 이후 13%p 증

가하였으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2015년 23.86% 대비 2017년 46.42%로 약 23%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공급현황은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 방향이 계약 측면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점 부여,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요건 확보 등에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비계약적 방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현재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의 주안점은 입찰 및 계약의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최근 2~3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용역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낮은 상황이다.

[표 8] 구매경로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 현황

연 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합계 (억원)	계약		비계약		소계 (억원)	계약		비계약		소계 (억원)	계약		비계약	
		금액 (억원)	비율 (%)	금액 (억원)	비율 (%)		금액 (억원)	비율 (%)	금액 (억원)	비율 (%)		금액 (억원)	비율 (%)	금액 (억원)	비율 (%)
2017	10,466	6,487	61.98	3,979	38.02	1,006	467	46.42	539	53.58	9,460	6,020	63.64	3,440	36.36
2016	8,032	4,639	57.76	3,393	42.24	629	127	20.19	502	79.81	7,403	4,512	60.95	2,891	39.05
2015	6,221	3,051	49.04	3,170	50.96	264	63	23.86	201	76.14	5,957	2,988	50.16	2,969	49.84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2)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참여현황

①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경로 분석

- 입찰 및 계약을 통한 구매방법 중 사회적기업의 구매경로를 살펴보면, 2017년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수의계약(38%), 제한경쟁(29%), 일반경쟁(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금액의 38%를 차지하는 것은 개별 입찰 건 중 2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이 다수를 차지하는 실태를 반영한다([표 9] 참조).

- 이는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소기업자우선조달대상(추정가격 고시금액 이하), 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추정가격 1억원 미만) 적용 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 다만,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은 2015년 50%에서 2016년 44%, 2017년 38%로 감소추세인 반면,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이 확대되고 있어 수의계약의 활용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 한편, 수기금액은 전자입찰을 통한 일반적 입찰 방식이 아닌 공공기관이 사전 설정된 소액(3-5백만 원)의 구매수요를 단순구매(일반적 구매 형태)형태로 사회적기업에게 구매한 후 전자입찰시스템에 실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전체의 약 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상 수기계약분은 소액 수의계약과 동일한 계약방법으로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구매가 가능하므로, 창업초기 소규모 사회적기업에게 공공구매 실적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공급 채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표 9] 계약방법별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참여현황

연도	계약 업체 수	합계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기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2018 ²⁾	937	30,253	4,071	12,602	1,746	7,699	947	2,189	1,101	20	53	7,743	225
2017	1,058	60,458	6,429	23,714	2,469	14,584	1,365	3,983	1,855	50	53	18,127	687
2016	596	29,430	4,786	17,525	2,125	7,475	980	4,395	1,574	35	106	-	-
2015	450	25,437	3,220	15,546	1,606	4,077	538	5,779	1,007	35	70	-	-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 이어 사회적기업의 조달대상별 공급유형을 살펴보면, 2017년 물품과 용역의 비중이 각각 45%, 43%를 차지하였으며, 용역이 2015년 33%에서 43%로 약 10%p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건축, 토목,

2) 2018년도 자료는 2018년 9월까지 집계된 실적(금액 및 건수)을 합산한 결과이며, 이하 2018년도 공공구매 실적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

감리 등의 용역을 지칭하나, 수요기관의 실적 입력 시 기술용역으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실상 일반용역에 해당된다.

- 한편, 공사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2%내외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조달청은 연도별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실적 집계 시 공사실적은 제외하고 있다.
- 따라서 조달대상별 등록된 사회적기업 수를 고려하여 용역조달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민간위탁과 같은 비계약적 방법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10] 조달대상별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참여현황

연도	계약 업체수	합계		합계 금액 (공사 제외)	공사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2018	937	30,214	4,070	3,682	835	387	22,599	1,868	6,618	1,787	162	27
2017	1,058	60,458	6,429	5,663	1,536	766	47,331	2,862	11,384	2,770	207	31
2016	596	29,430	4,786	4,344	879	443	23,542	2,052	4,855	1,929	154	363
2015	450	25,437	3,220	2,881	652	340	21,232	1,460	3,459	1,063	94	358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②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 실효성 분석

- 2017년도 사회적기업의 평균 공급건수는 61건으로 2015년 대비 6건이 증가하였으며, 평균 공급금액은 6.50억원에서 6.46억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 그러나 2017년도 기준 공공조달 실적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의 공급건수 중간 값이 9건, 표준편차가 262건인 점을 고려하면, 업체 간 수주기회의 양적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공급금액 측면에서도 평균금액이 약 6.5억원인데 반해, 중간 값은 약 1.1억원으로 6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표준편차가 약 20억원으로 공급

건수와 마찬가지로 실적 보유 상하위 업체 간 공급편차가 매우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사회적기업 공공조달 참여현황 상세분석(1)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건수	금액	평균건수	평균금액	건수 중간 값	금액 중간 값	건수 표준편차	금액 표준편차
2018	37,468	486,582	40	514	7	92	145	1,922
2017	62,996	668,758	61	646	9	108	262	2,032
2016	28,990	453,766	48	744	6	143	250	2,558
2015	25,605	302,874	55	650	6	110	288	2,457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 한편, 평균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2017년 기준 210개로 실적을 보유한 전체기업 수(1,058개)의 약 20% 수준이며, 평균이상 공급금액은 전체 평균 6.46억원 대비 4.1배 많은 약 2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 반면, 2017년 평균미만 실적보유 기업은 825개로 전체(1,058개)의 약 78%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공급금액 평균은 약 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이상 공급금액 보유 기업의 1/20 수준으로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공급기회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최근 3년간(2015~17년) 상위 10%의 공급업체가 전체 실적의 약 69%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하위 50%의 기업은 3% 미만으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실적관리 지표의 개선과 별개로 정책적 지원 목적 달성수준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2] 사회적기업 공공조달 참여현황 상세분석(2)

(단위: 개, 백만 원, %)

연도	평균 이상		평균 미만		상위 10%			하위 50%		
	업체수	금액	업체수	평균금액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2017	210	2,681	825	128	104	461,027	68.9	518	16,479	2.5
2016	103	3,562	507	171	61	323,575	71.3	305	14,060	3.1
2015	89	2,838	377	132	47	215,963	71.3	233	8,633	2.9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2)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참여현황

①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구매경로 분석

-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약방법별 공공조달 실적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과 유사하게 나타나나, 공공기관별 소액 단순구매 실적인 수기계약이 2017년도 건수기준으로 사회적기업 대비 약 27%p가 높은 56.7%이며, 금액기준으로 약 28%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공급경로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3] 참조).
- 이는 주로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 및 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 적용 대상 물품 및 용역과 고시금액 이하의 입찰규모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또한, 계약금액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 일반 및 제한경쟁을 포함하여 경쟁에 의한 공공조달 규모가 전체의 약 50%를 상회하는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자입찰이 아닌 소액구매 등으로 수요기관이 직접 집행한 계약규모가 130억 원으로 전체의 약 28%를 차지하며, 2018년 역시 전체 계약금액의 12%가 수기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적이다.
-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이 주된 공급방법이며 개별 공공기관의 비전자적 입찰로 이루어지는 수기계약이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계약방법별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참여현황

연도	계약업 체수	합계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기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2018	208	1,902	266	731	65	112	24	187	145	-	-	872	32
2017	243	3,823	467	1,140	156	233	27	278	154	1	0.07	2,171	130
2016	70	692	127	429	35	141	20	122	72	-	-	-	-
2015	36	149	63	123	49.5	8	4	17	9	1	0.5	-	-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 한편, 공공조달 참여 조합 수는 연평균 1.7배 이상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실적은 최근 3년간(2015~17년) 7.6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달대상별 공공조달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용역의 비중이 전체 실적금액 대비 평균 85%를 상회하며 사회적기업(43%)의 약 2배 수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회적경제가 상대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용역 부문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물품의 연도별 공급실적은 평균 20% 이하 수준으로 일반적인 기업 형태의 사회적기업과는 차별성을 가진 용역 중심 상품구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4] 조달대상별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참여현황

연도	조합수	합계		공사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수 (건)	금액 (억원)
2018	208	1,902	266	22	0.6	1,092	41	782	223	6	1
2017	243	3,823	467	27	2	2,526	64	1,268	401	2	0.2
2016	70	692	127	6	0.7	390	18	294	108	2	0.5
2015	36	149	63	5	0.4	36	5	108	58	-	-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②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효성 분석

- 2017년 사회적협동조합의 평균 공급건수는 20건으로 2015년 대비 16건 증가하였으며, 평균금액은 1.2억원 증가한 2.9억원 수준으로 성장하였다([표 15] 참조).
- 그러나 공공조달 실적을 보유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중간 공급건수는 6건 수준으로 201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표준편차가 약 77.1건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기업과 같이 조합 간 수주기회의 양적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실적금액 중간 값은 0.55억원으로 평균금액인 2.9억원 대비 5.3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표준편차 역시 약 7.9억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실적 보유 상하위 조합 간 공급편차가 매우 왜곡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15] 사회적협동조합 공공조달 참여현황 상세분석(1)

연도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수	평균	중간 값	표준편차	금액	평균	중간 값	표준편차
2017	3,235	20	6	77.1	47,302	290	55	788
2016	693	9	2	34.8	12,701	172	34	375
2015	149	4	2	5.9	6,263	174	23	588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 또한 2017년 기준 평균이상 실적보유 조합은 31개로 전체 실적보유 조합 243개의 약 13% 수준이며, 평균 공급금액은 전체 평균 2.9억원 대비 약 4.3 배 많은 약 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 반면 동년도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의 평균미만 공급금액 평균은 0.63억원이며, 평균미만 실적보유 조합은 132개로 전체의 약 54%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실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평균이상 공급금액 보유 기업의 약 1/20 수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공급실적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2015~2017년도에 걸쳐 공급조합 수 상위 10% 조합이 전체 공급실적의 약 66%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하위 50%의 조합이 5% 내외로 나타는 등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우선구매실적 관리지표의 개선과 별개로 정책적 지원 목적 달성수준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6] 사회적협동조합 공공조달 참여현황 상세분석(2)

(단위: 개, 백만원, %)

연도	평균 이상		평균 미만		상위 10%			하위 50%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합계	비중	업체수	금액합계	비중
2017	31	1,258	132	63	16	31,472	66.5	82개	2,680	5.7
2016	18	599	56	34	7	7,933	62.5	37개	592	4.7
2015	3	1,711	33	34	4	5,288	84.4	18개	162	2.6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3) 사회적경제 수의계약 확대 효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3),4), 제30조제1항제2호나목2)에 (2018.7.24.일 시행)」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30% 이상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 입찰 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국가계약법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제30조제2항에 개정안 반영(2018년 7월 8일 입법예고 완료, 2019.1.1.시행예정)」에 따라 2019년 부로 시행된다.

①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현황분석

- 2017년도 일반용역 계약 443,964건 중 수의계약은 359,028건으로 약 81%에 해당하며, 이 중 11%인 38,408건이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구간 적용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이 약 80%(30,523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8월말 기준 일반용역계약 339,960건 중 수의계약은 273,557건으로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80%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9.5%인 26,197건이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구간 적용대상으로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이 76%(19,86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17년 일반용역 계약 중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사회적기업이 228건이며, 이중 여성기업은 129 건으로 확인되었다.
- 2018년 8월말 기준 사회적기업이 172건이며, 이중 여성기업은 60건으로 분석된다.
- 2017년 물품 계약 255,502건 중 수의계약은 172,149건이며 이중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구간 적용 대상은 20,240건이며,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14,948건으로 나타났다.
- 최종 계약방법으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은 851건이며, 추천기준으로는 여성기업 33건, 장애인기업 4건 등 총 37건으로 매우 적은 규모이며, 사회적기업은 0건으로 확인되었다.

- 2018년도 물품 계약 185,540건 중 수의계약은 113,384건이며, 이중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구간 적용 대상은 14,177건으로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10,717건이다.
- 최종 계약방법으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은 762건이며, 사회적기업은 2017년 0건에서 88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실효성 측면에서 물품 및 용역계약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물품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 수의계약은 58,765건 감소하는 등 전체 비중의 6.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 다만, 이는 2018년 연말 예상실적 반영 시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대상 물품의 실적은 6.5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물품에 대한 비중은 3.42%p 감소하였다.
- 용역계약의 경우,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는 49,301건 증가하는 등 전체 비중 대비 20.28%p 정도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여성기업의 경우 수의계약 건수는 1,641건 증가하였으나 전체 대비 비중은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및 용역 공공조달 실적 현황

물품	2018	2017	용역	2018	2017
총 계약 건수[A]	185,544	255,502	총 계약 건수[A]	339,960	443,964
총 수의계약 건수[B]	113,384	172,149	총 수의계약 건수[B]	273,557	359,028
비율[B/A]	61.11%	67.38%	비율[B/A]	80.47%	80.87%
2천~5천만원 수의계약 건수[C]	14,101	10,151	2천~5천만원 수의계약 건수[C]	75,226	25,925
비율[C/B]	12.44%	5.90%	비율[C/B]	27.50%	7.22%
여성/장애인 수의계약 건수	761	895	여성/장애인 수의계약 건수	2,662	1,021
비율 [여성 2천~5천만원 수의계약 건수/B]	5.40%	8.82%	비율 [여성 2천~5천만원 수의계약 건수/B]	3.54%	3.94%
비율[여성2천~5천만원 수의계약건수인증업체 수]	2.5% (30,044)	3.7% (26,575)	비율[여성2천~5천만원 수의계약건수인증업체 수]	8.9%	3.8%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 사회적기업의 2017년 대비 2018년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물품의 수의계약은 21건 증가하였으나, 전체 비중은 0.04%p 감소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수 기준으로는 0.7%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8] 참조).
-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중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3,950건 증가하는 등 전체 수의계약 건수 대비 약 6.5%p 증가하였다.
- 용역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는 73건 감소하였으며, 전체 비중은 0.72%p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수 기준 역시 4.9%p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장애인기업과 비교할 경우 전체 계약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2018년 인증업체 수 기준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비중은 사회적기업이 물품은 1.9%p 높고 용역은 0.4%p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확대 적용이 지방계약법 대상 공공기관에게 2018년 7월말 시행된 점을 고려할 경우, 현재 시점에서 수의계약 금액 확대에 따른 영향력은 확인이 어렵다.
- 다만, 수의계약 금액 확대적용을 먼저 시행한 여성기업이 전체 수의계약건수 대비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비중과 인증업체 수 비중에 있어 큰 편차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금액 확대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적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018년 9월 기준 여성기업 대비 사회적기업의 인증업체 수가 '1:14.8' 수준으로 이 비율을 사회적기업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비중에 적용하면 약 6.3%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성기업 대비 약 1%p 높은 수치이다.

[표 18]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현황

물품 (2천~5천만원)	2018	2017	용역 (2천~5천만원)	2018	2017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건수	89	68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건수	173	246
사회적기업수의계약건/ 전체 수의계약건	0.63%	0.67%	사회적기업수의계약건/ 전체 수의계약건	0.23%	0.95%
사회적기업수의계약건/ 인증업체 수	4.4%	3.7%	사회적기업수의계약건/ 인증업체 수	8.5%	13.4%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의계약 현황분석

- 2018년 9월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의 총 계약건수는 2017년 대비 36건 증가하였으며, 수의계약은 4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편차가 3.84%p 수준이나, 2018년 연말 실적기준으로는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표 19] 참조).
- 물품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2.87%p(8건) 감소하였으며, 용역은 2017년 446건, 2018년 497건으로 9.2%p(31건 증가)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물품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이는 2018년 연말 실적 기준 적용 시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총 수의계약 대비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는 67건에서 11건으로 56건 감소하는 등 12.81%p가 하락하였으며, 이는 2018년 연말 실적을 반영하여도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이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한해 2018년 7월말 이후 적용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취약계층 30% 고용 요건이 충족이 어려워 현재까지 수의계약 확대효과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표 19]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의계약 현황

물품	2018	2017	용역	2018	2017
사회적협동조합 총 계약건수[A]	205	241	사회적협동조합 총 계약건수[A]	757	790
수의계약건수[B]	175	215	수의계약건수[B]	497	446
비율[B/A]	85.37%	89.21%	비율[B/A]	65.65%	56.46%
2천~5천만원 수의계약 건수[C]	8	16	2천~5천만원 수의계약 건수[C]	11	67
비율[C/B]	4.57%	7.44%	비율[C/B]	2.21%	15.02%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4) 사회적경제 주요 공급 물품 및 용역 분석

① 사회적기업의 주요 공급 물품 및 용역 분석

-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주요 물품은 인쇄물, 교재가 공급건수 기준 1, 2위에 해당하는 공급품목이며, 데스크톱컴퓨터, 영상감시장치, 배전반 등이 주력 공급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이외 서적, 달력, 도시락, 현수막, 복사용지 등도 주요 공급 품목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표 20] 사회적기업의 주요 공급 물품

(단위: 건,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물품명	건수	금액	물품명	건수	금액	물품명	건수	금액	물품명	건수	금액
기타 인쇄물	314	6,060	기타 인쇄물	387	8,618	기타 인쇄물	360	11,859	기타 인쇄물	210	5,026
교재	75	706	데스크톱 컴퓨터	100	381,032	교재	112	654	교재	79	533
데스크톱 컴퓨터	66	155,134	교재	72	348	데스크톱 컴퓨터	70	856,629	서적	72	1,231
폐쇄형배 전반	39	31,144	영상감시 장치	51	4,894	폐쇄형배 전반	67	44,686	신선도시 락	55	481
감지종자 또는종묘	37	321	곡류	48	441	서적	67	608	달력	45	128

영상감시 장치	34	5,276	폐쇄형배 전반	47	37,836	달력	66	1,602	데스크톱 컴퓨터	44	825,427
채소류	31	338	채소류	45	865	영상감시 장치	59	9,972	영상감시 장치	40	33,720
종이인쇄 물제작서 비스	30	644	수중펌프	43	3,930	수중펌프	57	2,885	도시락	35	555
팜플릿	30	516	화장실용 화장지	41	3,977	화장실용 화장지	54	15,703	폐쇄형배 전반	34	6,624
서적	30	185	감자종자 또는종묘	38	417	신선도시 락	47	1,030	연감	32	275
배추김치	27	401	프린트및 복사용지	37	20,717	안내판	46	8,204	화장실용 화장지	30	2,588
닭	24	110	연감	35	347	게시판 또는엑세 서리	45	136	안내판	27	3,349
기타 (Guitar)	24	197	쌀종자또 는종묘	32	369	정품토너	36	334	현수막	27	98
액정모니 터	23	20,796	LED실내 조명등	31	32,796	재제조토 너	36	7,708	게시판 또는 엑세서리	27	73
장갑	23	5,602	서적	30	753	선물세트	35	347	LED실내 조명등	27	85,076
합계	1,822	432,477	합계	2,511	857,161	합계	3,325	1,587,053	합계	2,516	1,709,130

주1)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의 물품만 명시함.

주2) 합계란 해당년도 전체건수 및 금액을 의미함.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 한편, 사회적기업의 주요 공급 용역을 살펴보면, 연도별 1위~3위 품명은 건물청소서비스,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기타교육서비스이며, 이외 기타청소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소독서비스, 인쇄물제작서비스 등이 계약건수와 금액 양 측면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표 21] 사회적기업의 주요 공급 용역

(단위: 건,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용역명	건수	금액	용역명	건수	금액	용역명	건수	금액	용역명	건수	금액
건물청소	1,198	34,862	건물청소	1,543	67,375	건물청소	2,018	105,854	건물청소	2,041	94,970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시설설비 유지관리 서비스	464	11,953	기타교육 서비스	641	29,386	기타교육 서비스	884	46,154	기타교육 서비스	845	44,101
기타교육 서비스	373	14,602	시설설비 유지관리 서비스	576	14,320	시설설비 유지관리 서비스	638	22,037	시설설비 유지관리 서비스	599	16,030
시설물경 비서비스	256	7,790	시설물경 비서비스	286	34,145	시설물경 비서비스	358	31,823	시설물경 비서비스	357	13,039
기타청소 서비스	217	7,403	기타청소 서비스	280	7,655	기타청소 서비스	351	6,036	기타청소 서비스	318	4,811
기타물품임 대서비스	163	1,267	교육지원 서비스	239	15,443	소독서비 스	303	1,312	소독서비 스	255	1,667
소독서비 스	152	725	소독서비 스	238	1,345	기타물품 임대서비 스	231	888	기타물품 임대서비 스	231	898
교육지원 서비스	120	3,916	기타물품 임대서비 스	215	694	교육지원 서비스	230	17,526	교육지원 서비스	206	14,133
기타사업 지원서비 스	109	7,519	건설폐기 물처리서 비스	175	6,015	기타사업 지원서비 스	218	17,119	기타사업 지원서비 스	152	13,545
건설폐기 물처리서 비스	106	2,616	기타사업 지원서비 스	146	11,332	건설폐기 물처리서 비스	207	5,615	건설폐기 물처리서 비스	140	3,861
종이인쇄 물제작서 비스	75	1,920	종이인쇄 물제작서 비스	143	3,479	종이인쇄 물제작서 비스	176	3,212	종이인쇄 물제작서 비스	108	2,670
기타수리 서비스	53	922	기타행사 기획및대 행서비스	86	2,379	기타행사 기획및대 행서비스	126	7,290	기타행사 기획및대 행서비스	100	4,272
기타행사 기획및대 행서비스	47	2,320	기타기술 용역	68	900	기타기술 용역	117	2,250	기타기술 용역	76	895
기타기술 용역	44	808	기타수리 서비스	63	291	기타유해 폐기물처 리서비스	64	419	기타수리 서비스	72	293
토목설계 용역	36	1,036	교양교육 서비스	57	1,669	교양교육 서비스	62	1,735	교양교육 서비스	71	2,601
합계	3,955	136,322	합계	5,530	242,958	합계	6,969	344,686	합계	6,462	284,778

주1)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의 용역만 명시함.

주2) 합계란 해당년도 전체건수 및 금액을 의미함.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공급 물품 및 용역 분석

- 최근 4년간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조달을 통해 연간 3건 이상 공급한 물품은 인쇄물, 교재/서적, 복사용지, 화장지 등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표 22] 참조).

- 특히, 교재, 서적, 팸플릿 등 인쇄물과 관련된 품명이 공급건수와 금액에 있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계장제어장치와 같이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장비를 공급하는 조합이 2017년 이후 5건 이상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22]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공급 물품

(단위: 건,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물품명	건수	금액	물품명	건수	금액	물품명	건수	금액	물품명	건수	금액
장갑	2	16	프린트 및 복사용지	16	79,200	교재	24	1,225	기타 인쇄물	22	670
화장실용 화장지	2	231	화장실용 화장지	14	643	프린트 및 복사용지	12	36,579	교재	16	689
로켓세트	1	36	기타 인쇄물	11	1,338	기타 인쇄물	10	1,054	프린트 및 복사용지	5	19,163
외피용살균소독제	1	84	술	5	862	계장제어장치	8	12,791	팸플릿	5	351
바코드시스템	1	179	선물세트	3	268	영양보충용 식품	7	3,034	현수막	5	67
비	1	37	장갑	2	43	화장실용 화장지	7	22,934	교육용놀이세트	5	158
자석판 학습교구	1	34	일반철물	2	28	티켓 발급기	6	1,015	계장제어장치	5	31,582
술	1	167	종이인쇄물제작성비스	2	168	수동식소화기	6	2,982	볼펜	5	114
증기세척기	1	15	책상	2	165	일반철물	5	31	수동식소화기	4	362
티켓 발급기	1	101	칫솔	2	82	종교서적	5	127	기념품	4	626
합계	15	1,332	합계	92	105,380	합계	241	153,348	합계	205	117,774

주1)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물품만 명시함.

주2) 합계란 해당년도 전체건수 및 금액을 의미함.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 한편, 최근 4년간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조달을 통해 연간 3건 이상 공급한 용역은 교육, 청소, 인쇄물제작, 유지관리 서비스 등으로 설문조사와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 특히, 교육 관련 서비스는 세부품명 기준 4개 품명으로 2017년~2018년 기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18년 MICE산업(행사대행 등) 등이 속한

기타사업지원서비스가 24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3]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공급 영역

(단위: 건,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용역명	건수	금액	용역명	건수	금액	용역명	건수	금액	용역명	건수	금액
정보화교육서비스	21	8,063	기타교육서비스	90	62,001	기타교육서비스	183	118,148	기타교육서비스	204	140,135
어학교육서비스	11	8,613	건물청소서비스	34	12,382	건물청소서비스	86	15,503	건물청소서비스	141	13,962
건물청소서비스	10	7,311	교육지원서비스	29	18,896	교육지원서비스	82	51,703	교육지원서비스	62	45,835
기타교육서비스	9	4,522	정보화교육서비스	23	6,734	어학교육서비스	76	46,493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60	1,662
소독서비스	9	333	교양교육서비스	21	5,022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70	2,785	어학교육서비스	39	18,160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8	93	어학교육서비스	20	14,843	정보화교육서비스	48	16,100	정보화교육서비스	27	11,330
체험활동서비스	6	679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17	310	기타사업지원서비스	35	27,934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25	1,145
교육지원서비스	5	1,654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7	5,352	소독서비스	28	2,207	기타사업지원서비스	24	31,576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4	474	소독서비스	16	1,083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28	94	기타청소서비스	20	164
기타사업지원서비스	4	560	기타청소서비스	13	130	교양교육서비스	21	712	교양교육서비스	20	743
합계	87	32,302	합계	267	126,623	합계	608	280,874	합계	582	263,804

주1)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용역만 명시함.

주2) 합계란 해당년도 전체건수 및 금액을 의미함.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5) 사회적경제 공급실적 중복실태 분석

- 2017년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수 기준 여성기업 중복업체 98개, 장애인기업 20개, 중증장애인생산단체 9개, 장애인표준사업장 19개, 사회적협동조합 41개로 총 187개(10.2%)가 타 우선구매대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24] 참조).

- 설문조사 결과, 중복 우선구매자격 보유 기업의 약 70%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시행 전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때, 복수 우선구매자격 중 절반 이상이 여성기업으로 중복실적 금액의 47.9%를 차지하며, 중복업체 수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 19개가 실적기준으로 약 43.1%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41개가 중복 등록되어 있으나 실적 측면에서는 37억 원으로 전체 중복실적금액의 약 3%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 사회적기업 대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복수의 인증을 확보한 사회적기업의 공급실적이 약 18.4%로, 이는 명목상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실적 달성과 실제 사회적기업이 체감하는 효과의 간극을 확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 2015년 이후 최근 2~3년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간 복수 자격 보유 업체들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실적 통합인정 추세에 따라 공공기관의 복수자격 보유 업체 선호 및 확보 요구로 어려움 가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자격 중복 현황

유형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단체	장애인표준 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합계
업체 수(개)	98	20	9	19	41	187
중복 비율(%)	5.3	1.1	0.5	1.1	2.2	10.2
중복금액(억원)	596	60	14	536	37	1,243*

주1) 2017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수는 1,837개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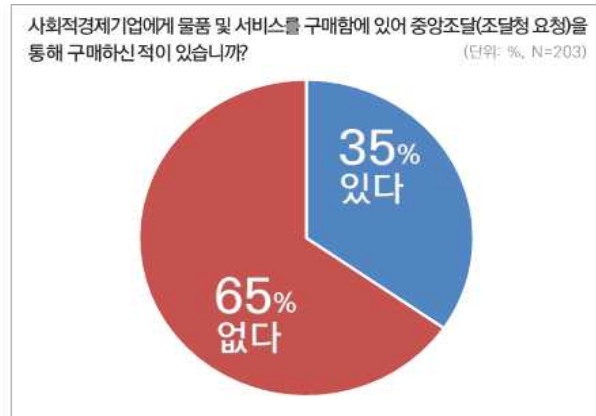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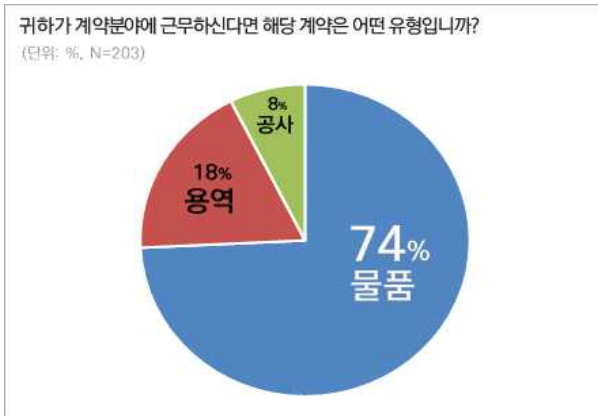
주2) 2017년 사회적기업 공급실적 6,764억원(업체 중복 포함) 기준 수혜중복도는 약 18.4% 수준임.

자료: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한국조달연구원 가공

2.3.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이행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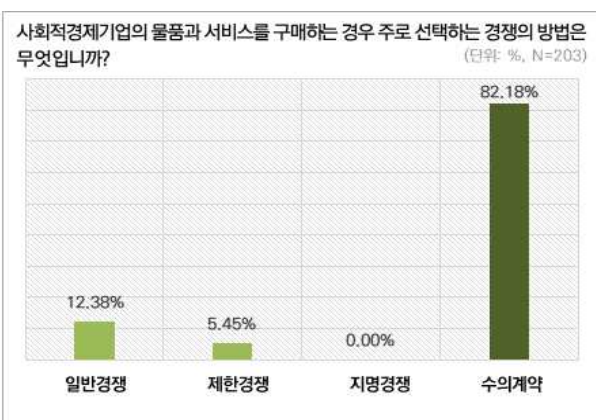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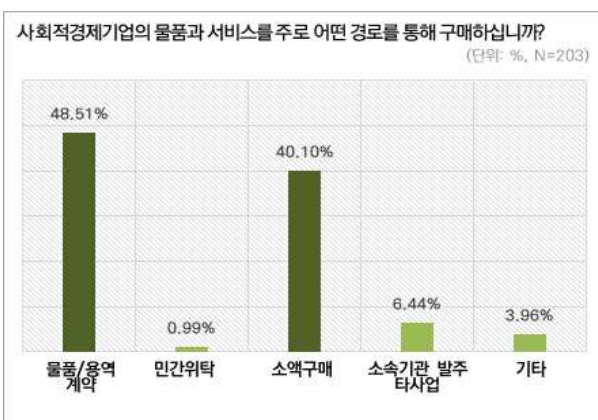
(1) 수요기관 대상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조사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의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식별을 위해 공공기관별 공공구매 현황, 구매경로, 장애요인, 활성화 요인,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서비스에 대한 성능/품질/만족도 등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2018년 공공구매 의무 대상기관 8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응답수는 203개로 집계되었다.
 - 설문응답자에 관한 기본정보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주무관급이 전체 응답의 약 51%(103명)에 해당하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응답이 약 46%(89명)로 실무적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응답대상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 또한, 응답자의 근무기간은 3년 이상 근무자가 약 67%(136명)로 업무경험과 전문성 측면에서도 응답자의 대표성이 확인되었다.
 - 담당 업무는 계약업무 약 51%(104명), 회계/재무 약 24%(48명), 총무/행정 약 14%(28명)로 약 89%가 관련 업무 담당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공조달 시장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조달을 통한 물품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4] 참조).
 - 응답자가 주로 담당하는 공공조달 입찰분야는 물품(74%), 용역(18%), 공사(8%)순으로 대부분 물품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조달청을 활용한 중앙조달과 수요기관별 자체조달 비중은 35:65의 비율로 자체조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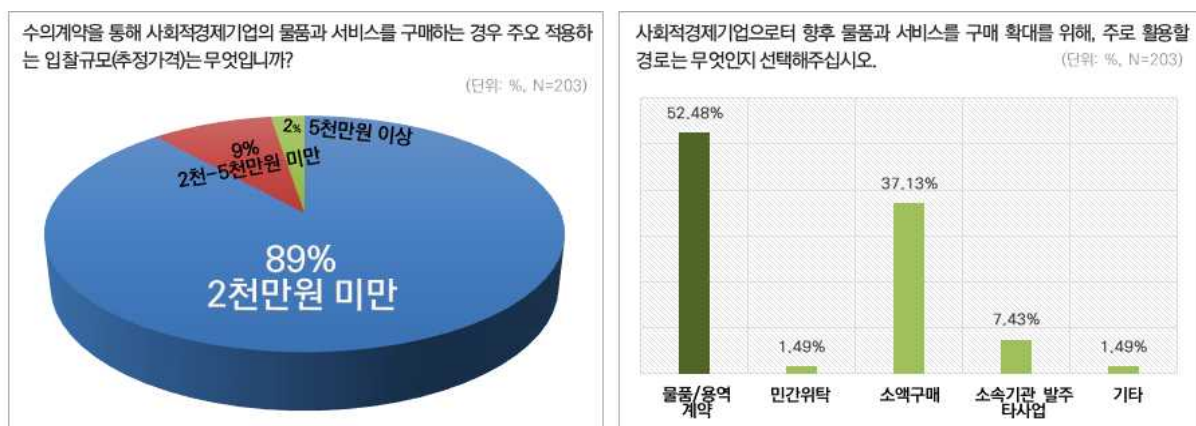
[그림 4]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1

- 수요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과 서비스 구매경로는 주로 계약에 의한 방법 (48.5%)과 수요기관별 자체조달 방법 중 전자입찰 등의 방법이 소액 직접구매 (40.1%)를 통해 다수의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 이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 발주 타 사업 수행업체에 게 하도급 형태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약 26%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다.
- 한편, 입찰 및 계약의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전체의 약 82%가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우선구매 추진한다고 응답하였다.
- 사실상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가 자율적 성장을 촉진하는 경쟁보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발주기관이 선택하는 수동적 공급경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의계약과 유사한 소규모 구매 건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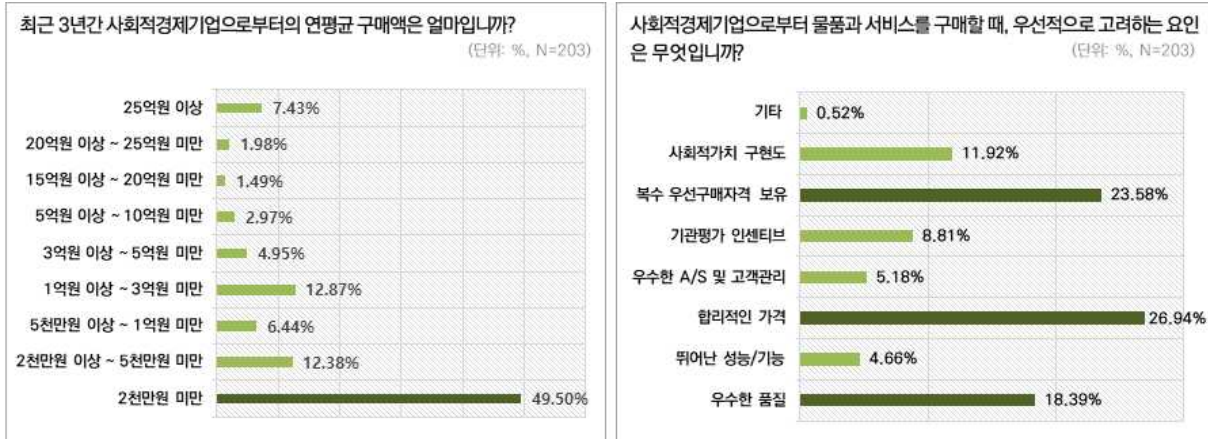
- 수의계약을 통해 80% 이상의 계약이 진행되나, 건당 계약금액 규모는 1인견적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규모인 20백만 원 미만 규모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 또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및 서비스 구매 확대를 위한 경로 선택 시, 현재 활용하는 경로 대비 입찰 및 계약방법을 활용 할 의사는 4%p 증가하였으며, 소액구매 방식은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사업 소요 물품/용역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간접구매는 방식도 약 7% 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 따라서 소규모 수의계약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계약 중심의 구매경로 활용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계약과 소액구매, 타사업 하도급 참여를 통한 공급기회 확보 계획 간 점점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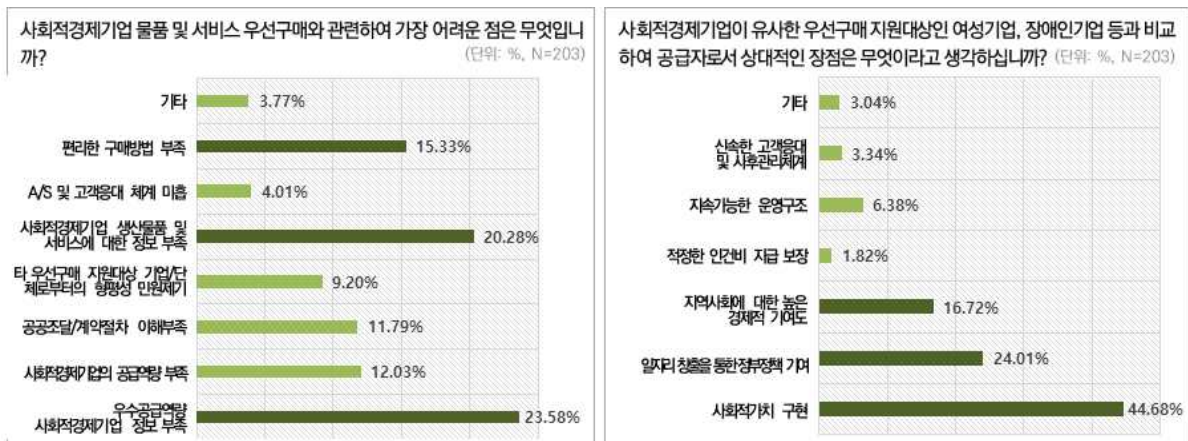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우선구매 실적의 약 68%가 1억원 미만 수준이며, 특히 과반에 이르는 응답자가 2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응답하였다([그림 7] 참조).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물품과 서비스 구매 시 우선적 고려사항 중 복수의 우선구매 자격 보유가 약 2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대부분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물품 및 서비스 구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 우선구매제도 실적 확보를 통해 기관

경영 평가 시 중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타 우선구매 인증 미보유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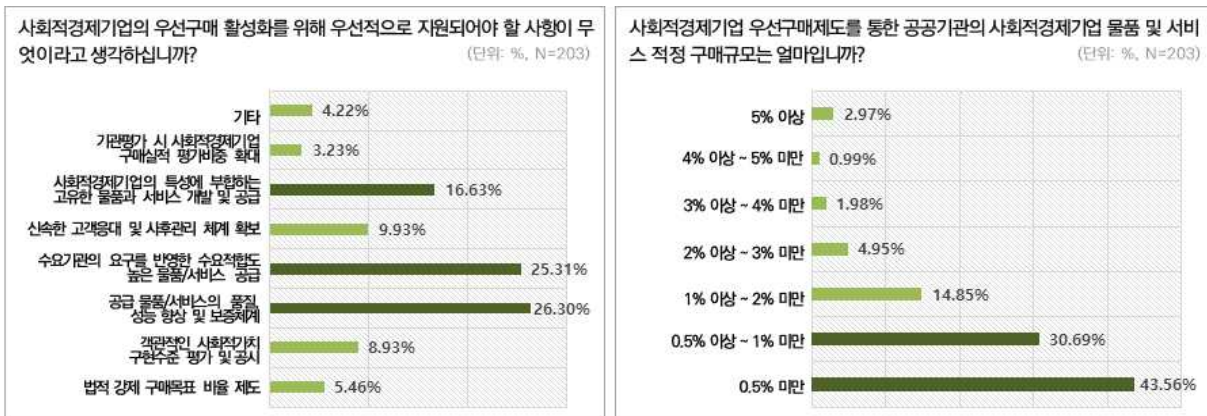
-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활성화에 가장 큰 어려움은 우수한 공급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과 생산 물품 및 서비스 정보부족이 전체의 약 44%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편리한 구매 접점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약 15%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그림 8] 참조).



[그림 8]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5

- 한편, 타 우선구매 대상 기업 대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급자로서의 장점으로 사회적가치 구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 높은 경제적 기여도 등을 선택하여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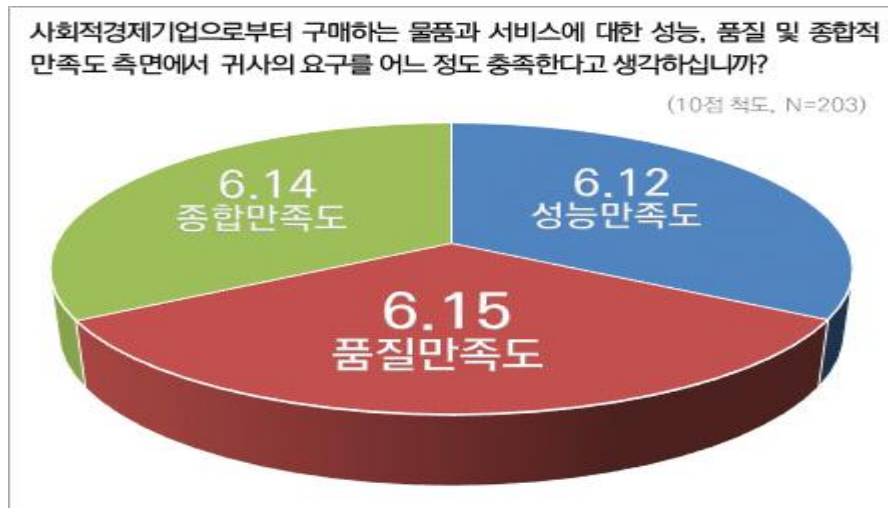
- 그러나 실제 공급자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이러한 우선구매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부재로, 실제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평가요소로의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
-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소요에 대해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체계 제공(26%), 수요기관 요구 적합도가 높은 물품 및 서비스 공급(25%),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물품 및 서비스 개발 및 공급(17%) 순으로 나타나는 등 기본적인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전제로 사회적경제 특성을 반영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급요구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9] 참조).
- 적정 우선구매 규모에 대해 전체의 75%가 1% 미만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활성화 방안 중 법정강제목표비율 선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 연계성이 있으며,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목표비율 기대치 5% 미만 편차 현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이처럼 수요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능/품질 개선 요구가 높고,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물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이 고유한 경쟁우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9]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6

- 사회적경제기업이 수요기관에 공급한 물품 및 용역의 성능, 품질 및 종합적인 만족도는 평균 6.13점으로 보통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이 기대하는 품질 및 성능은 7.03점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참조).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요인으로 선택한 방안이 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품질 및 성능 향상, 객관적인 품질보증체계 제공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수요기관이 체감하는 품질/성능 수준은 보다 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기관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사회적경제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물품 및 서비스 개발하여 공급 적합도를 높이는 매칭 기능과 객관적인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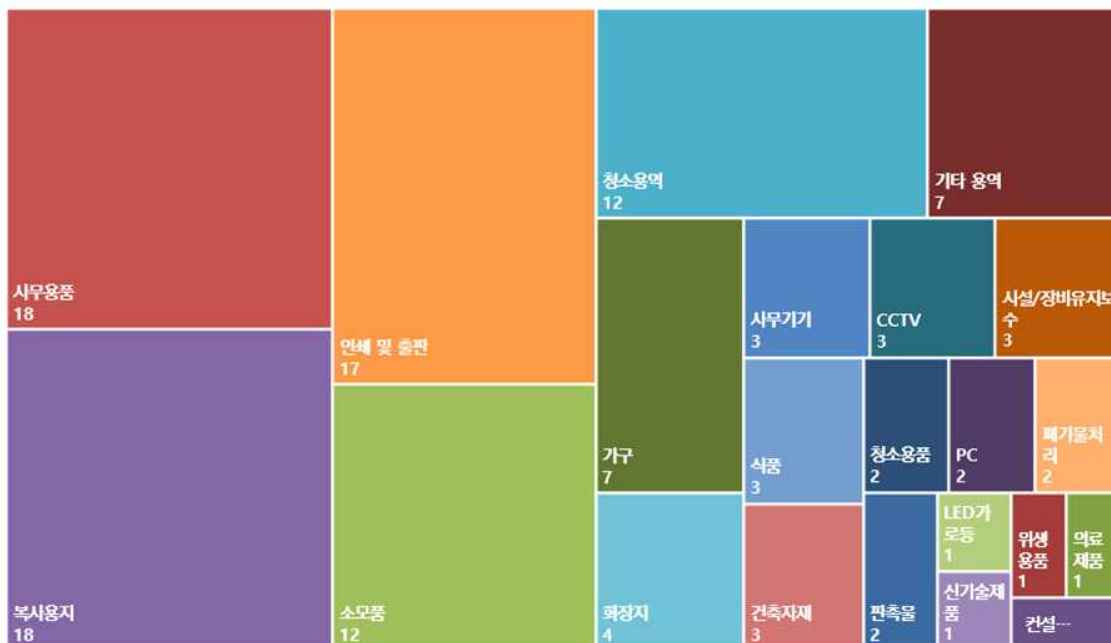
[그림 10]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7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활성화 요인 중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공급 경쟁력 강화’가 18건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정보부족 해소 등이 6건으로 나타났다([그림 11] 참조).
- 다음으로 개선요구 빈도가 높은 분야는 다양한 우선구매제도 실적 달성에 따른 부담과 구매목표비율 설정 적정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확인되었다.
- 마지막으로 상기 두 차원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통합적 지원 플랫폼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구매 접근성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제공이 핵심적 개선요구 사항으로 식별되었다.

주요 내용	빈도
사회적기업 상품/정보 부족/업체리스트 제공/현사이트 제공 정보는 단편적, 실질적 품질 및 가격 비교 통한 구매의사결지원	6
비교우위 및 경쟁력제고/품질보완/브랜드개발/만족도 제고/인증취득	18
과도한 수의계약 요구 지양 및 적극적 입찰참여	3
수요기관 특성상 구매가능 상품/금액 적음, 조달규모 큰 수요기관은 불리	5
구매실적 평가 시 단순구매실적 아닌 실질적 영향력인 고용창출, 사회적기여도 등 평가	2
복수의 우선구매대상과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충족 어려움, 우선구매제도가 너무 많음, 이중혜택, 자동실적 분류, 사회적경제기업 3%견고는 높음, 단일시스템구매	11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부족으로 대도시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유리/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 유도	1
용역분야 직고용 전환에 따른 물품구매 한정 평가	1
별도의 종합쇼핑몰 구축, 편리한 구매, 상품구색 다양화, 구매편리성 향상	6
종합정보망 구축 및 수요기관별 구매여건 변화를 고려한 평가, 사회적기업 유효성 실시간 확인 체계	3
고시금액 이상 사회적경제 제한경쟁	1
전반적 경영역량, 공공조달 업무처리 역량 및 사후관리체계 확보	2
우선구매제도 악용하여 저품질 높은 단가 요구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제공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대국민홍보/환경 조성	1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신속한 수의계약 법령 개정(국가계약법)	3
감사부담 완화	1

[그림 11]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8

- 수요기관이 주로 구매하고 있는 상품으로는 사무용품/소모품, 복사용지, 인쇄 및 출판용역, 청소용역 등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같이 사회경제적 배려 대상 기업과 단체에서 주로 공급하는 구매실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9

- 한편, 공공기관의 향후 구매계획이 있는 상품과 현재 구매하고 있는 사무용품

(컴퓨터, 프린터, 가구 등)/소모품, 복사용지(종이류) 등 현행 구매 상품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이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선발자인 타 지원대상 기업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시사한다([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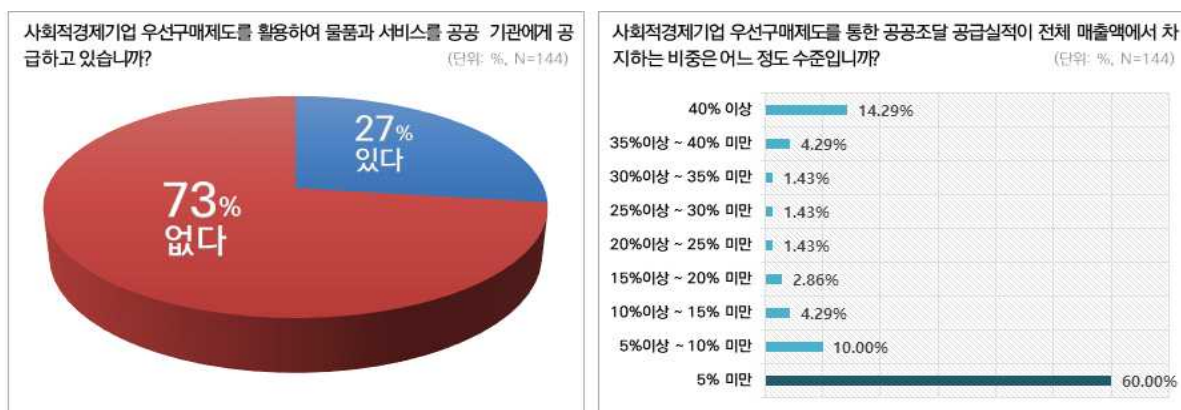
내용	빈도	내용	빈도
다이어리, 기념품 등	1	채용위탁	1
레미콘, 아스콘 등 관급 공사용자재	3	전산장비(PC, 모니터 등) 등	1
프린터 기동	1	종질지	1
약품장, 컴퓨터 등	1	수배전반	1
화장지	10	365안심병동 간병인	1
사무용 가구	1	냉난방기외 다수	1
3자단가물품	1	사무기기 등	1
사무용품	1	TV	1
사무용품, 기념품 등	1	정보시스템개발 또는 유지관리	1
가구 등	1	용지	1
안전난간 등	1	지류	1
LED	1	책상, 캐비닛, 서랍, 소프트웨어 등	1
종질지	1	A4용지	1
냉난방기	1	A4용지, 신문용지	1
컴퓨터	1	LED조명등	1
식재료	1	차량	1
양곡	1	다운라이트	1
전동커튼	1	테이블 등	1
업무용 비품(책상, 캐비닛, 의자 등)	1	인쇄물 등	1
데스크탑 및 모니터	11	종질지	1
차량, 사무용 가구	1	복사용지	17
토너, 회의용 탁자 등	1	-	-

[그림 13] 공공(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10

(2)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조사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요구사항 식별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별 공공구매 현황, 구매경로, 장애요인, 활성화 요인,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능/품질/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 설문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약 3,300개 업체 및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응답수는 144개로 집계되었다.
 - 설문응답자에 관한 기본정보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36.5%), 사회적협동조합(59.6%), 자활기업(1.3%)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응답의 약 84%(121명)가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입원(급)이 응답하였다.

-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운영 상황을 고려하면³⁾ 응답자의 대표성이 확보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응답기업의 규모는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규모가 약 75%(108명), 연매출액 3억원 이하가 약 65%(93명)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창업초기의 영세한 기업으로서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전체 응답기업의 59%(85명)는 정부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 제도와 연계된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은 경험이 없어 현행 지원 사업의 내용 및 전달채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기업의 약 73%는 공공기관에 공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체의 약 70%가 전체 매출액에서 공공조달이 차지하는 실적 비중이 10% 미만인 것으로 응답하였다([그림 14] 참조).
- 공급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응답의 신뢰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개선소요 식별에 있어서는 타당성 높은 응답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2017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별 공공구매 실적 현황자료 분석결과, 약 50% 정도의 사회적기업과 30% 정도의 사회적협동조합만이 공급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 응답자의 모집단 대표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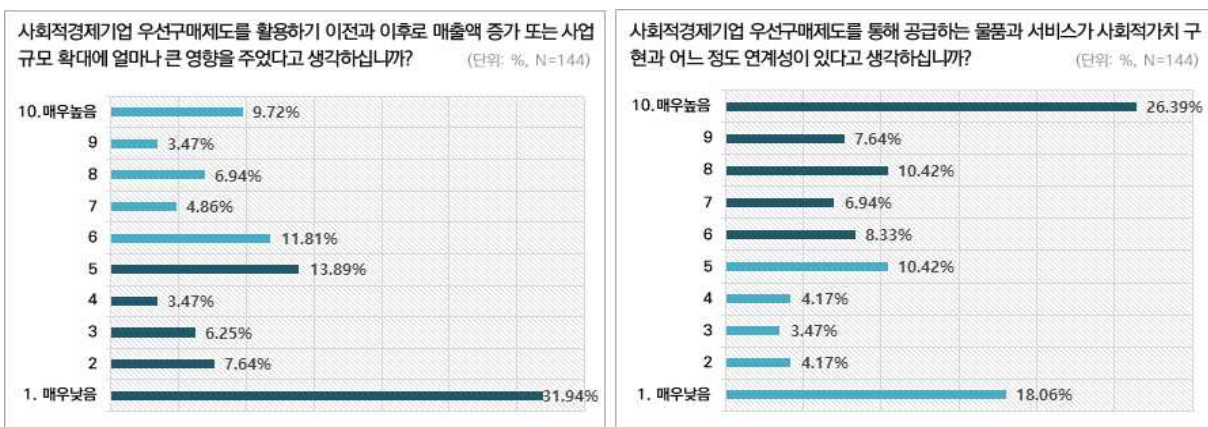
[그림 14]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1

-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약 63%가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매출액 증대와 사업규모 확대 영향력을 ‘보통 이하’ 인 것으로 응답했으나, 이는 공

3) 응답자의 약 68%(98명)가 설립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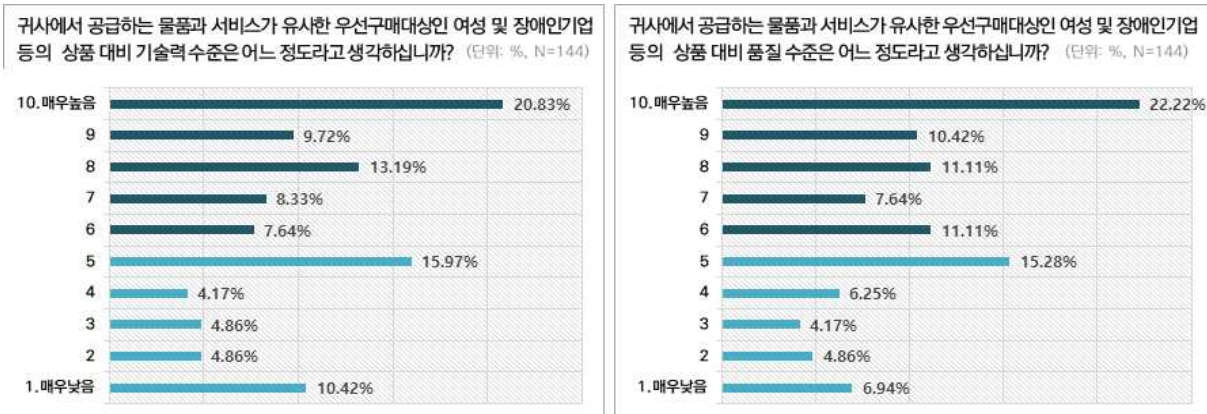
공조달 참여실적이 없는 기업이 응답한 결과로 보이며 실제 약 38%의 기업은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5] 참조).

- 공공조달 실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가 사회적가치 구현에 비교적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9%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응답기업 모두 실제 매출액 및 사업규모 확대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도가 사회적가치 구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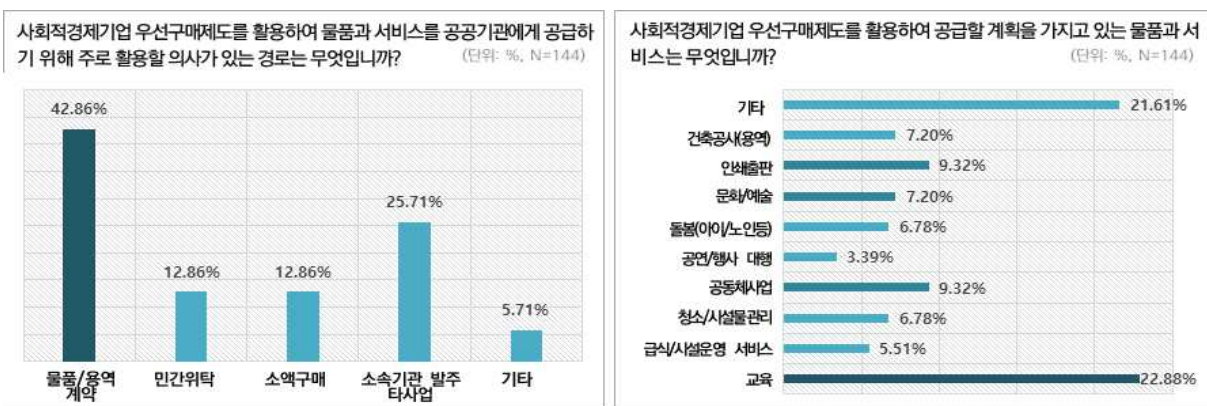
[그림 15]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2

- 응답기업의 약 61%가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여성 및 장애인기업 등 동일 지원 속성을 갖춘 기업 대비 기술력(6.37)과 품질(6.56)이 뛰어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6] 참조).
- 실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과 품질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문구류, 잡화류 등이 많고 용역의 경우 일반 영리법인 대비 근로자 인건비 보장, 취약계층 고용 등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나 공급자별(특히, 공급경험 없는 업체) 역량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수요기관 설문조사 분석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성능, 품질 및 종합만족도가 평균 약 6.13 정도로 수요자와의 인식 편차가 큰 점에 주목하여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3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급 계획 보유 물품 및 서비스 중 교육 관련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7] 참조).
- 특정 품명의 공공구매 확대방안 등을 마련할 경우 교육 관련 서비스, 문화예술, 공동체사업 및 인쇄출판업에 대한 지원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전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불특정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방안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과 공급 희망물품 및 용역의 공급조건을 고려한 차별적인 접근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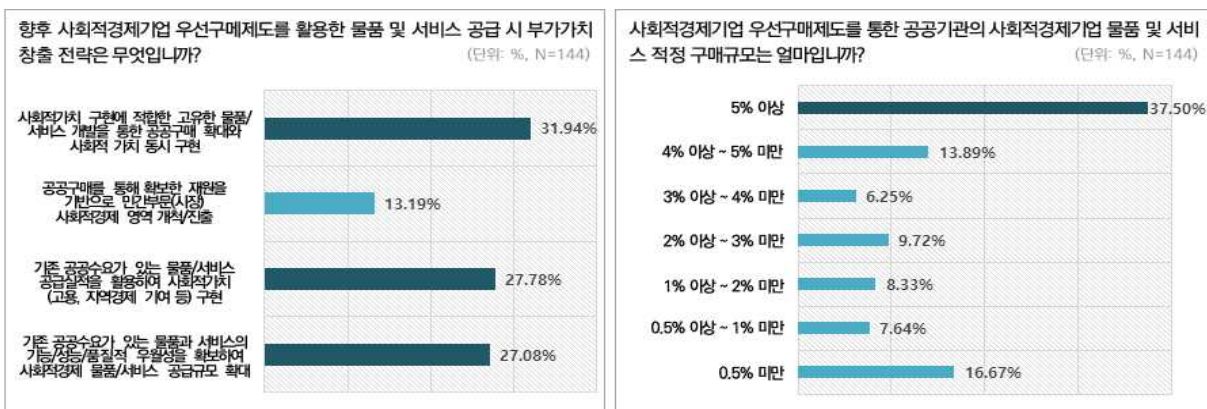


[그림 17]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4

-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활용전략은 대부분 공공수요와 연계하여 사회적가치를 구현하는 3개 방안을 선택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민간부문으로 발전적 성장 진출 전략은 약 13%수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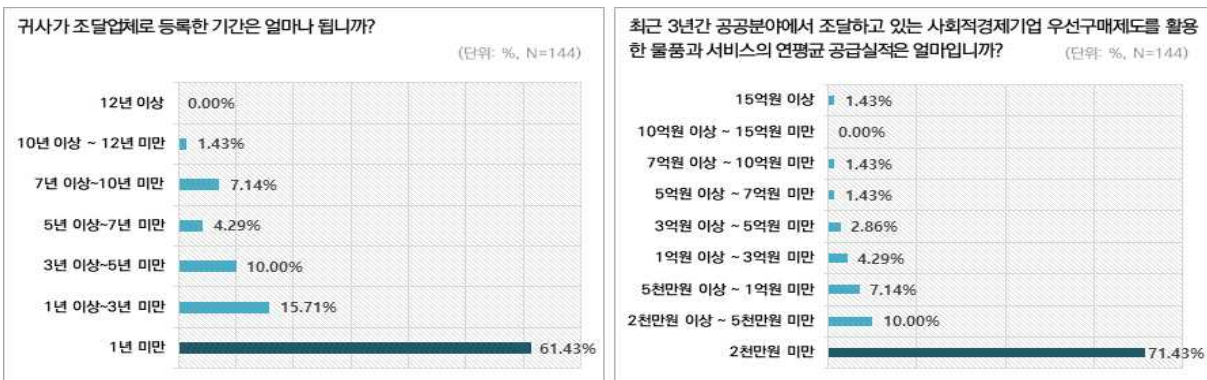
매우 낮게 나타났다([그림 18] 참조).

- 적정 공공구매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52%가 총 구매액의 5% 내외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기관은 총 구매액의 1% 미만에 대한 응답이 75%인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급확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 약 32%의 업체가 사회적가치 구현에 적합한 물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급전략을 선택한 것은 긍정적이나, 응답기업의 55%는 공공조달 시장에 의존/안주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선택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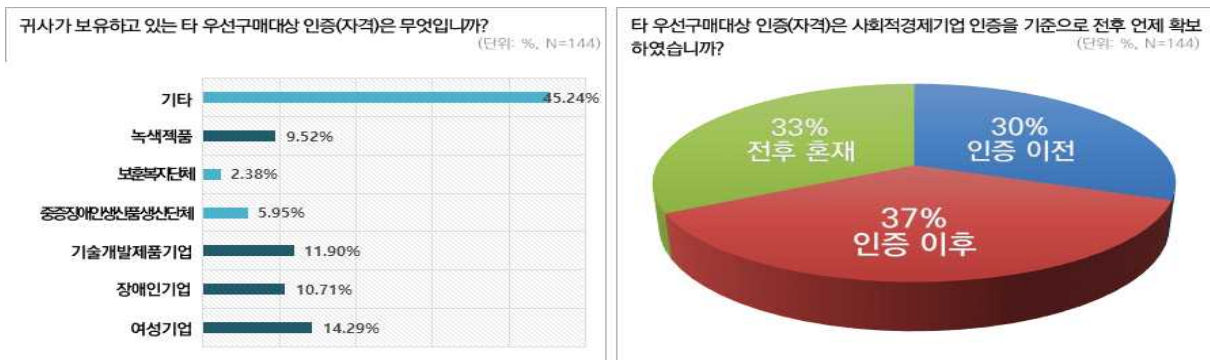
[그림 18]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5

- 응답기업의 약 77%가 조달업체로 등록한 기간이 3년 미만이고 약 89% 기업이 연평균 1억원 미만 공급실적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차등형,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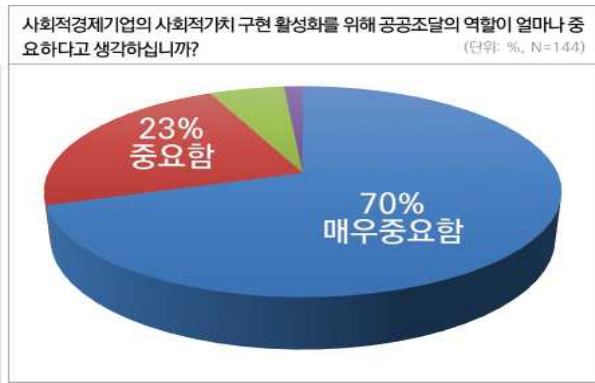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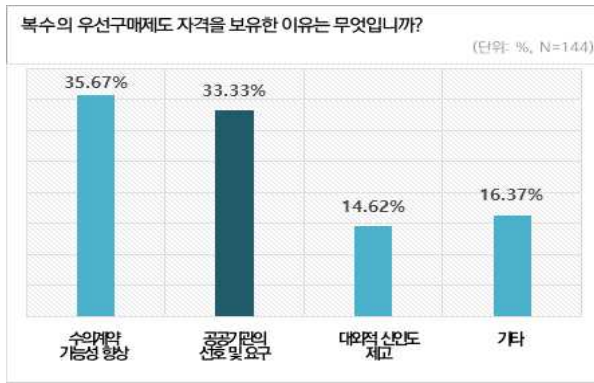
[그림 19]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6

- 한편, 전체의 45%가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외에 여성, 장애인기업 등의 타 우선구매제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복수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복수의 인증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의 70%는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전후 또는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0] 참조).
- 이는 최근 사회적기업은 신설하는 경우보다 기존 기업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발주기관에서 복수의 우선구매제도가 요구하는 구매목표비율 충족을 위해 복수의 인증을 보유한 우선구매대상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여성, 장애인기업 등 기존 지원 대상이 사회적경제기업 인증까지 획득할 경우, 지원 집중도 및 정당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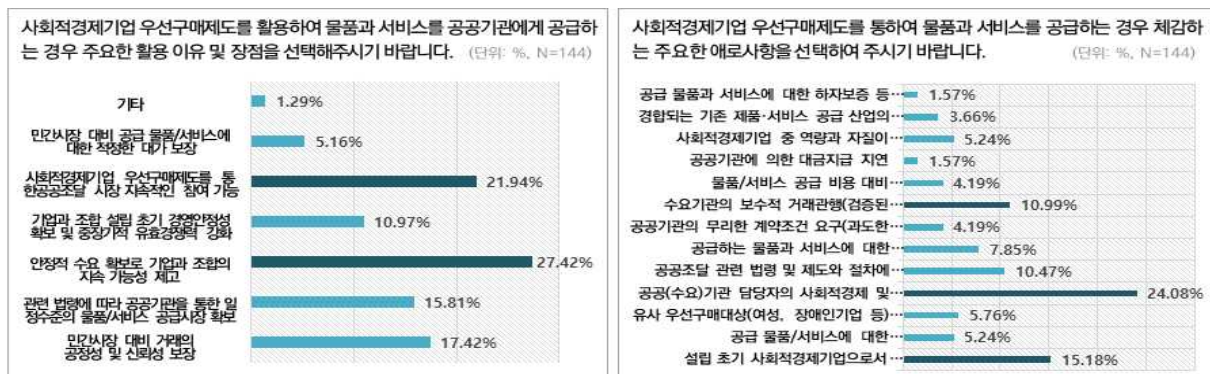
[그림 20]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7

- 실제 복수의 우선구매제도 자격을 보유한 이유에 대해 33%는 공공기관의 선호 및 요구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외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를 위한 단순획득 노력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그림 21] 참조).
- 한편, 전체의 70%가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해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조달을 효과적인 사회적가치 구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한 사회적경제기업 내에서도 복수인증 보유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입·낙찰 기회 확보가 어려우므로, 각 인증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실적보고시 중복계상을 인정하지 않고 복수 인증인 경우 하나의 우선구매제도만을 활용토록 조정이 필요하다.



[그림 21]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8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여 물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주요한 활용 이유 및 장점으로 ‘안정적 수요 확보로 기업과 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공공조달 시장 참여 가능’이 22% 수준으로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참조).
- 한편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도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설립초기 공공조달 업체 등록이 15%, 공공기관 담당자의 사회적경제 이해 부족이 24%, 수요기관 담당자의 보수적 구매 관행이 11%로 응답하는 등 공공조달 관련 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활성화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따라서 공공조달 시장진입단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사회적경제 이해도 향상 및 적극적인 구매확대를 위한 노력을 제고하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9

-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생각하는 공급 물품과 용역에 대한 성능만족도는 7.01, 품질만족도 7.22, 종합만족도 6.7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종합적인 만족도는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23] 참조).
- 공공기관이 인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공급 물품, 서비스의 품질/성능/종합 만족도는 6.13점으로 발주기관과 공급업체간 기대-만족이 다소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10

-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관련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민간수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역량 향상 지원(5건), 창업초기 기업/조합에 대한 상대적 우선 지원(4건) 등의 요구가 높은 점을 통해 우선구매제도를 마중물로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본질적 공급역량을 향상하는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그림 24] 참조).
- 또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자인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 및 공급특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적극적인 구매노력(9건)과 수요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제공/구매접근성 제고 수단 요구와 연계성이 확인되었다.
- 한편,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의 법정 의무화 요구(9건)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의 내용	빈도
민간시장 경쟁수준으로 역량 강화/인지도 인식 제고 노력	5
창업초기(3년 미만 등) 사회적협동조합 적극적 우선구매지원	4
각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박람회 구매계획설명회 개최, 접근성 높은 판로지원 체계 구축, 공공구매상담회 개최 확대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전환 진입장벽 높음	1
사회적가치 실현도 평가후 우선구매 지원 여부 결정	1
취약 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급실적 증대 노력	1
문화, 예술, 공연, 교육 등 서비스 분야 우선구매 지원 확대/위탁사업 참여 지원 확대/업종별 맞춤형 차별적 지원	5
법정 우선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여성기업수준)/ 쿼터제 운영 / 우선구매실적 가점상향 / OEM, ODM 의무구매	7
공공기관 담당자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상품 이해도 및 구매노력 제고 / 지자체별 정무적 판단 최소화/ 기초단체의 우선구매 비협조 해소 / 수요기관의 형식적 구매에 대한 적극적 관리	9
타 우선구매제도 실적 중복인정에 의한 평가 지양/ 복수인증 보유 업체의 독과점화/ 타 우선구매법령과 충돌	2
단발성/일회성 구매가 아닌 중장기적 수요 안정성 보장(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의 고용안정성과 연계)	2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특히 창업초기)/전문교육과정 개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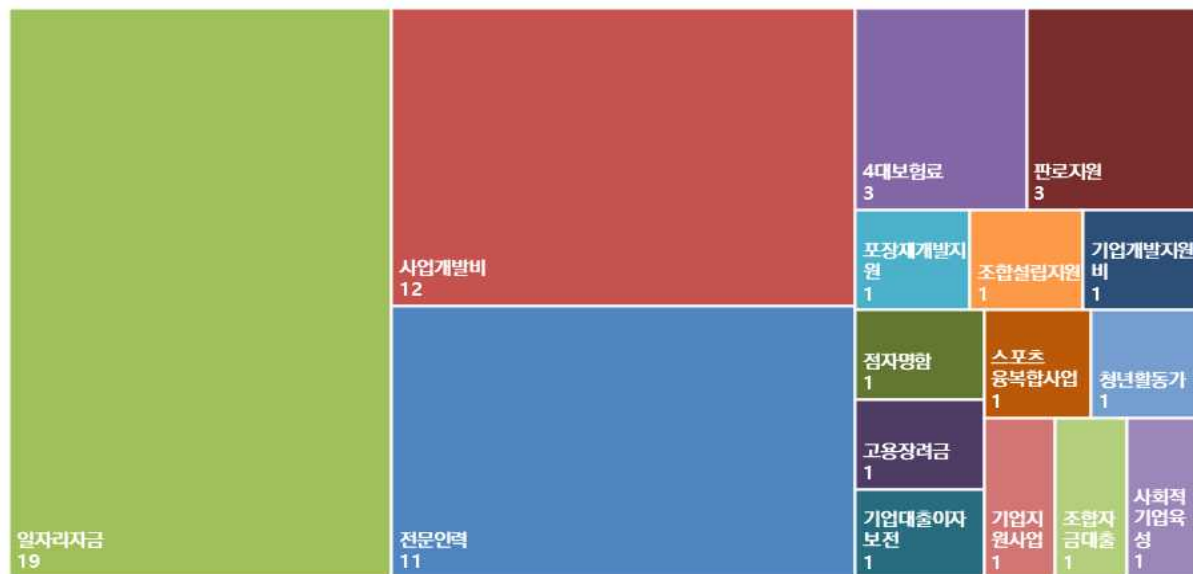
[그림 24]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관련 요구/건의 사항

-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재 주로 공급하는 상품은 상대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가 높아 농특산물, 커피/빵 등의 식품류가 비중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게 나타났으며, 이외 인쇄 및 출판용역, 사무용품, 화장지 등은 수요기관의 구매 상품 구색과 유사하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주요 공급 물품 및 서비스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혜 받은 공공부문 정책 및 제도적 지원사업 중 전체의 약 70%가 일자리자금(고용지원), 사업개발비(상품개발/마케팅), 전문인력 지원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6] 참조).
-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및 마케팅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실제 공공기관이 공급상품 품질/성능 향상요구와 객관적 역량을 보증하는 인증체계 등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개발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26] 사회적경제기업 수혜 지원사업

2.4. 소 결

- 본 장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구매현황과 실태분석을 위하여 정량적 차원에서 2015년~2018년 9월까지 약 4년간의 공공구매 계약 실적자료를 전수분석 하였다. 또한 정성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의무구매 대상인 832개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사회적기업 2,030개, 사회적협동조합 1,16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경로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이 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이 계약에 의한 방법이 주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공급실적의 약 40%는 민간위탁 등 비계약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5년 이후 계약적 방법이 소폭 늘어나는 추세이나, 약 40% 정도 내에서 비계약적 방법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한 공급방법으로 나타나는 등 다른 우선구매제도와 차별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 공급경로 중 계약의 방법을 통한 경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등 상대적으로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해 공급한 금액과 건수가 2017년 기준 각각 38,298건(전체의 약 62.3%), 4,324억원(전체의 약 67.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규모 입찰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점과 주요 공급 물품과 서비스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면서 절대 입찰규모 역시 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2.1억원 미만)와 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계약방법 측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7년부터 확인 가능한 개별 수요기관에서 전자입찰이 아닌 단순 소액구매(평균 100만원 이내, 기관 별 최대 500만원 이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한 후 수기거래 내역을 입력한 수기거래 실적이 2017년도 전체 계약건수의 약 30% 수준인 18,127건, 금액기준 약 10.7%인 687억원으로 확인된 점이다. 수기거래를 통한 우선구매는 계약법령 적용을 통한 입찰의 방법이 아닌 단순구매행위로 사실상 완전한 수의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주요한 공급경로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2017년도 물품이 건수기준으로 약 78.2%, 금액기준으로 약 44.5%를 차지한 반면 용역은 건수기준 전체의 약 18.8%, 금액기준 43.1%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건수기준으로는 물품의 비중이 약 80% 가까운 수준이나 금액기준으로는 각각 57:43 수준으로 비교적 물품 편중 현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물품의 경우 단위 입찰건당 소규모 입찰(건당 평균 약 6백만원)이 많고 용역의 경우 입찰규모가 평균 약 4배 이상으로 입찰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건당 평균 약 24백만원)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판로지원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분석결과, 2017년 기준 사회적기업별 평균 공급건수는 61건, 공급실적은 64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급건수의 중간 값이 9건, 공급실적 보유 사회적기업 중 공급실적 중간 값 금액은 108백만원으로 전체 평균과 매우 큰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 공급현황 분석결과 공급건수는 단순평균값과 중간 값이 약 7배, 금액기준 약 6배로 공급실적 분포의 왜곡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공급실적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104개 업체가 전체 공급실적의 약 68.9%인 4,610억원을 점유하고, 하위 50%에 해당하는 518개 업체는 약 2.46%인 165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통해 보다 명확해졌다고 판단된다. 2015년 이후 공급실적 기준 상위 10%와 하위 50% 업체 간 공급실적 비중 편차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전체적으로 동일한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이러한 공급실적의 과도한 편차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적지원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하위 50%기업에게 보다 많은 공급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분석결과 주요한 공급경로는 계약의 방법이 약 46.4%(467억원), 비계약적 방법이 53.6%(539억원)로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급경로 비중인 62:38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50:50수준의 계약 및 비계약적 방법이 활용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교육 등에 있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급(구매)경로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계약의 방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과 유사하게 경쟁제한적인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을 통해 공급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7년도 건수기준 약 37.1%인 1,418건, 금액기준 약 66.4%인 310억원을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 대비 건수기준 약 25%정도 낮고 금액기준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단위입찰 및 계약규모가 사회적협동조합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계약방법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분석결과와 달리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구매)방법이 전체 공급실적의 약 56.8%인 2,171건, 금액기준 약 27.8%인 130억 원으로 나타난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건수 기준 약 26.8%p, 금액기준 17%p 높은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에 있어 수의계약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요기관의 소규모구매 기회를 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향후 우선구매 지원 계획 수립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2017년 기준 물품이 건수기준 약 66.1%인 2,526건, 금액기준 약 44.5%인 2,8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역의 경우는 건수기준 전체의 약 18.8%인 11,384건, 금액기준 13.7%인 41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 대비 매우 낮은 물품공급비율인 점을 확인하였다.
- 반면 용역의 경우 건수 기준 약 33.2%인 1,268건, 금액기준 약 85.9%인 401억 원으로 사회적기업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공급상품은 용역인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방안 수립 시 주요 공급 상품의 차이에서 오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단위 입찰건당 물품의 경우 약 3.8백만원, 용역의 경우 약 31.6백만원으로 약 8배 이상(사회적기업의 물품 및 용역의 건당 규모 편차의 2배 이상)의 규모차를 보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있어 용역 공급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이 우선구매 공급을 통해 판로지원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식별되었다. 2017년 기준 사회적협동조합별 평균 공급건수는 20건, 공급실적은 29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 대비 약 4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러나 사회적기업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공급건수 중간 값 6건, 공급실적 보유 사회적기업 중 공급실적 중간 값 금액은 55백만원으로 전체 평균과 매우 큰 표준편차를 보였다. 공급현황 분석결과 공급건수는 단순평균값과 중간 값이 약 3.3배, 금액기준 약 5.3배로 공급실적 분포의 왜곡 역시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 이러한 편중 현상은 공급실적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16개 조합이 전체 공급실적의 약 66.5%인 315억원을 점유하고 하위 50%에 해당하는 82개 조합은 약 5.67%인 27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통해 보다 명확해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 분석결과 대비 하위 50% 조합의 공급실적 비중이 약 2배 이상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사회적기업 분석결과 대비 2015년 이후 공급실적 기준 상위 10%와 하위 50% 업체 간 공급실적 비중 편차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 및 증가하여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인 왜곡현상을 개선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급실적의 과도한 편차발생현상은 사회적기업 분석 시사점과 동일하게 공급실적 기준 하위 50% 조합의 우선구매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앞서 살펴본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활용 경로 중 입찰 및 계약의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주된 계약체결 방법은 수의계약이었다.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 금액기준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는 1인이 제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2인 이상에게 견적을 제출받아 낙찰하한을 이상 최저가 투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여성기업의 경우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법정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준수와 2인 이상 사실상의 경쟁을 수반하는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이 가능토록 변경하였다.

- 사회적경제기업도 2018년 7월 28일 지방계약법률 및 시행령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와 관련해서도 여성기업과 동일한 1인 수의계약금액에 대한 상한선 확대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입찰에서고 취약계층 30%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1인 건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 물품 기준 수의계약은 2017년 기준 계약건수 기준 약 67.4%인 172,149건이며 이중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는 10,151건으로 전체 수의계약건수의 약 5% 수준이다. 용역의 경우는 물품보다 수의계약건수 및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용역계약건수 443,964건 중 수의계약은 359,028건으로 약 80.9% 수준으로 나타났다.
- 물품 기준 약 12.6%p 높은 결과로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건수 역시 25,925건으로 전체 용역 수의계약의 약 7.2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2015년 이후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동일하게 1인 건적에 의해 집행된 여성기업의 물품기준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895건으로 전체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의 약 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용역의 경우 3.94%수준으로 물품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대 계약건수는 용역이 126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물품기준 여성기업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895건은 2017년 말 기준 인증 여성기업 수 26,575개의 약 3.7% 수준이며 용역의 경우는 3.8%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 7월 28일 이후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계약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는 물품 기준 약 0.67%인 68건, 용역기준 약 0.95%인 2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인증 사회적기업 수 대비 물품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비중은 3.7%, 용역의 경우는 1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물품 대비 용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물품기준 전체 계약건수 241건 중 수의계약 건수가 215건으로 약 89.2%를 차지하였으며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는 16건으로 수의계약 중 약 7.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역의 경우는 전체 계약건수 790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446건으로 56.46%를 차지하여 물품 대비 약 33%p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67건으로 전체 수의계약 대비 약 15%로 물품의 2배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확대 여부는 상대적으로 먼저 시행한 여성기업 대비 인증업체 수 기준 집행비율은 소폭 높은 수준으로 법령 개정의 효과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이는 2018년 9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계약법령 적용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7월 28일 시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계약체결 가능 기간이 1개월 내외 수준인 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2015년 1,822건에서 2018년 9월 현재 2,516건으로 약 694건 증가하였다. 공급되는 주요 물품의 종류는 인쇄물, 교재가 공급건수 기준 1, 2위에 해당하는 공급품목이며 데스크톱컴퓨터, 영상감시장치, 배전반 등이 주력 공급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이외 서적, 달력, 도시락, 현수막, 복사용지 등도 주요 공급품목이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물품의 경우 2015년 15건에서 2018년 9월 현재 205건으로 계약건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급물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복사용지, 기타인쇄물, 교재, 서적, 기념품, 문구류, 화장실용화장지 등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저부가가치 물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급물품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단순하고 부가가치가 낮으면서 기존 공급자들과의 과당경쟁이 이루어지는 물품들이 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경우 데스크톱, 영상감시장치, 배전반, 펌프, LED실내조명등 일정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두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여성기업, 장

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 또는 영리기업으로 존속하던 법인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고유 공급물품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공급물품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지는 한계점은 향후에도 기존 공급업체들과의 경쟁구도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물품의 개발 또는 용역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한편 용역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2015년 건수기준 3,955건에서 2018년 9월 현재 6,462건으로 약 2,50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연도별 1위~3위 품명은 건물청소서비스,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기타교육서비스이며 이외 기타청소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소독서비스, 인쇄물제작서비스 등이 계약건수와 금액 양 측면에서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2017년 87건에서 2018년 9월 현재 582건으로 약 6.7배 이상 확대되었다.
- 주요 공급 용역 품명 1위~3위는 기타교육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화교육, 어학교육,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등이 비교적 빈번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소독서비스, 기타청소서비스 등도 여전히 계약건수 및 금액 측면에서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 중 타 우선구매제도의 공급 자격을 보유한 복수 인증자격 보유 사회적기업에 의한 우선구매 공급실적은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집계 시 보유한 복수의 인증가격에 중복적으로 동일 구매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수인증자격 보유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실적 인정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 우선구매제도 자격(인증)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자격을 보유한 중복인증 보유업체가 2017년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의 약 10.2%, 금액기준 18.4% 수준으로 확인되어 적정 수준으로 참여기회를 제한할 필요성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성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 및 공급특성을 분석하고 활성화 및 저해요인을 식별하였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의무구매 대상인 공공기관 832개에 대한 1개월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 총 203개 기관으로부터 설문결과를 수집하였다. 주요한 분석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우선구매하는 방법은 입찰 및 계약에 의한 방법이 약 48.5%로 주를 이루었다. 정량적 실적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응답 공공기관 담당자의 약 40.1%는 수기계약으로 관리되는 단순소액구매 방법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 향후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활용한 방법 역시 입찰 및 계약의 방법이 약 52.5%, 소액구매가 37.1%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지원 계획수립 시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 응답 공공기관의 약 89%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주로 구매하는 단위 입찰 규모는 2천만원 이하로 응답하였고 이는 수의계약 활용 응답비율이 82.2%인 것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 중 타 우선구매제도의 공급 자격을 보유한 복수 인증자격 보유 사회적기업에 의한 우선구매 공급실적은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집계 시 보유한 복수의 인증가격에 중복적으로 동일 구매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수인증자격 보유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실적 인정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 우선구매제도 자격(인증)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자격을 보유한 중복인증 보유업체가 2017년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의 약 10.2%, 금액기준 18.4% 수준으로 확인되어 적정 수준으로 참여기회를 제한할 필요성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 합리적인 가격 26.9%, 복수의 우선구매자격 보유 23.6%, 우수한 품질 18.4%, 사회적가치 구현도 11.9%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요기관이 구매의 본질적인 목적인 가격과 품질을 우선시 하면서 정책적 목적인 사회

적가치 구현과 우선구매 실적 인정 확대를 위해 복수의 우선구매자격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우선적 공급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그러나 정량적 분석을 통해 복수 우선구매자격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액기준 비중이 약 20% 수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공급실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유발하는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용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우수한 공급역량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23.6%,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물품 및 서비스 정보 부족 20.3%, 편리한 구매방법 부족 15.3%,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공급역량 부족 12% 등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활성화 저해 요인은 수요자로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타 우선구매제도 대비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지는 장점으로 사회적가치 구현 44.7%,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부정책 기여 24%,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경제적 기여도 16.7%로 나타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공급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성능에 대한 보증체계 26.3%, 수요기관 요구 반영한 수요 적합도 높은 물품 및 서비스 공급 25.3%,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고유하는 물품 및 서비스 공급 16.6%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물품 및 서비스 구매의 본질적 가치인 정확하게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 보증체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정량적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저부가가치 이면서 기존 공급업체와 과당경쟁이 심화되는 물품이 아닌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한 공급수요가 식별되었다는 점은 향후 우선구매 계획과 전략 수립에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 한편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구매목표비율을 설정 시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전체 응답의 약 74%가 총구매액의 1%미만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만족도 6.15, 성능만족도 6.12, 종합만족도 6.14점으로

만점인 10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우선구매를 통한 공급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낮은 품질/성능/종합만족도 인식 결과가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우선지원 소요로 품질 및 성능향상을 위한 보증체계 마련 응답비율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현재 공공기관이 구매하고 있거나 향후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 및 용역의 종류 등은 정량적 분석결과와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약 3,000개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1개월간 진행되었다 주요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결과 기업의 매출액과 사업성장 기여도에 대한 인식에서 전체 응답기업의 약 63%가 보통 이하로 응답하였고 특히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약 32%인 것으로 나타나 우선구매제도의 유효경쟁력 지원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반면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물품 및 용역 공급이 사회적가치 구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약 59%의 업체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의 품질 및 성능 등이 경쟁하는 타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응답기업의 약 59%가 사회적경제기업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회적경제기업 역시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상품의 공급은 입찰 및 계약의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42.9%, 응답자가 속한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타사업 실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로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은 각종 교육서비스, 급식시설운영서비스, 청소/시설물관리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정량적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전략은 전체응답의 약 89%가 공공시장에 기반을 두고 민간시장 등으로 선순환적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 중 타 우선구매제도 자격 중복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14.3%, 장애인기업 10.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6%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급실적 자료분석을 통한 중복수혜 현황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복수 우선구매 자격보유는 공공기관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급자로서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시 주요 고려요인으로 “복수의 우선구매자격보유”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과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복수의 우선구매자격 취득 시점이 사회적경제기업 취득 이후인 경우가 최대 약 70%에 이르는 결과를 통해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우선구매자격 보유 이유에 대한 질문에 “수의계약 가능성 향상” 35.7%, “공공기관의 선호 및 요구” 33.3%로 응답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복수우선구매 자격 보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 이러한 복수 우선구매자격 보유 현상은 각각의 정책적 지원목적과 취지 구현 보다는 우선구매 과정에서 공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복수 우선구매자격 보유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공공기관의 요구 및 우선구매 실적의 중복인정 실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이 생각하는 우선구매제도의 적정 공급규모는 총구매액의 3% 이상이 약 57.5%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공공기관이 인식하는 적정 공급규모 1%이하와 약 2%p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우선구매를 통해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요 이유는 “안정적인 수요 확보로 기업/조합의 지속 가능성 향상” 27.4%, “공공조달시장에 지속적 참여 가능” 22%, “민간시장 대비 높은 공정성/신뢰성 확보” 17.4%, “기업/조합 설립초기 경영안정성 확보” 11% 등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적경제기업은 우선구매제도를 “안정적 판로확보로 지속 가능한 경영안정성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약 60% 이상이며 동시에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환경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이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 담당

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부족” 24.1%, “기업/조합 설립초기 조달업체 등록 어려움” 15.2%, “공공기관의 보수적 거래관행(검증된 공급업체 선호)” 11%,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절차 정보부족” 10.5% 등으로 식별되었다.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성화 제약요인 중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거래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의 품질만족도 7.22점, 성능만족도 7.01점 및 종합만족도 6.76점으로 평균 7.0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품질, 성능, 종합만족도 평점 6.13점 대비 약 0.87점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품질, 성능 등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품질 및 성능 등의 인식 격차 0.87점은 절대적 관점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활성화 및 지원요인으로 응답한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품질보증/관리체계” 등을 감안할 경우 상대적으로 큰 인식격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종합만족도에 대한 자기평가가 6.76점인 것은 수요기관의 종합만족도 평점인 6.14점과 가장 적은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공급자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공통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 이러한 판단은 품질만족도 격차 6.15점(공공기관):7.22점(사회적경제기업), 성능만족도 격차 6.12점(공공기관):7.01점(사회적경제기업)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는 현상과 대비하여 비교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3장.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기관평가 현황분석

3.1.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현황

(1)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활용 개요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은 “정부권장정책” 평가항목으로 공공구매 대상 832개(2018년 적용 대상)기관은 연도별 기관평가에서 기본 평가항목(배점 1~7점)으로 반영하고 있다([표 25] 참조).
- 다만,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 시 법정의무구매 대상만 평가하고 임의대상인 사회적경제는 제외하고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 시 총 배점 중 2점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 기획재정부에서 각 소관부처별로 평가기준 이관 후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적용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 합동평가 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각각 1점씩 배점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기업 통합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지방의료원의 경우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으며, 이관 이전에는 반영하지 않아 우선구매 관련 지표가 부재한 상태이다.

[표 25] 공공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활용 현황

구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실적 평가 반영 여부	평가제도/기관	평가항목
국가기관	미반영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법정의무구매 실적만 평가(사회적경제 제외)
지방자치단체(광역)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행안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1점), 사회적협동조합(1점)
지방자치단체(기초)			
교육청	미반영	시도 교육청 평가/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시미반영
공기업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정부권장정책 지원(계량평가총배점5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0.2 ~ 0.4점)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반영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주무부처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 기타공공 기관 평가편람에서 반영, 2017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준용 하여 주무부처 평가체계 전환 이후 평가미 실시 및 미반영 사례 확대
지방공기업	반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정안전부(154개), 광역시도(189개, 상/하수도)	사회적기업 생산품구매와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는 통합하여 평가(목표는 물품·용역 총구매액 의1%)
지방의료원	미반영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 복지부(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이관)	우선구매 관련 지표 부재
기타특별법인	미반영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실적 미반영
보건복지부 2016년 기준 13개	반영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중앙의료원	-정부권장정책 평가항목(계량평 가총배점5점)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 선구매 실적(세부 배점 미확인) * 2016년 최초 도입 지표로 추세분 석 불가
고용노동부 2017년 기준 7개	반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별전재단(0.4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잡월드(0.4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고용노동부권장정책(계량평가 총배점7점)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 선구매 실적(세부배점(가중치) 04. 점~0.6점)
교육부 2017년 기준 18개	반영	-기관유형 1: 국립대학교병원(치 과병원포함) 13개 미적용 -기관유형 2: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 선구매 실적(세부배점(가중치) 03. 점~0.7점)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실시/미반영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	-

2017년 기준 34개		정동극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24개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기준 4개	미 실시/미 반영	(재)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과기부 2018년 기준 36개 (부설기관 12개 포함 시 48개)	미 실시/미 반영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등 48개 기관	-
관세청 2018년 기준 1개	미 실시/미 반영	(재)국제원산지정보원	-
국가보훈처 2018년 기준 1개	미 실시/미 반영	88관광개발(주)	-
국무조정실 2018년 기준 24개 (부설기관 3개 포함 시 27개)	연구기관 평가시 미 반영(일자리, 고용 등만 반영)	한국개발원(KDI) 등 국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 연구소 등 27개 기관	-
국방부 2018년 기준 3개	미 실시/미 반영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
국토부 2018년 기준 10개	미 실시/미 반영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에스알, 항공안전기술원, 주택관리공단(주) 등 10개 기관	-
금융위원회 2018년 기준 4개	미 실시/미 반영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기상청 2018년 기준 2개	미 실시/미 반영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기획재정부 2018년 기준 2개	미 실시/미 반영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
문화재청 2018년 기준 1개	미 실시/미 반영	한국문화재단	-
방위사업청 2018년 기준 2개	미 실시/미 반영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법무부 2018년 기준 4개	미 실시/미 반영	IOM이민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기타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주무부처에서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다수의 부처가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표 26] 참조).

-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준용 대상기관만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실적에 대해 정부권장정책(계량평가 총배점 5점) 세부평가 항목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상 금융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산업통상자원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환경부),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이상 특허청)와 같은 경우, 표준계산산식이 없으며 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을 바탕으로 별도 산식을 마련하여 평가하는 등 평가의 체계적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26] 기타 공공기관 평가지표 현황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1 유형	기타공공기관 2 유형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13개 기관	5개 기관

(2) 평가기관별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현황

-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매년 경영평가 시 총 구매액(물품+용역 구매합계액)의 3%를 구매총액 기준 목표치로 설정하여 3% 이상이면 만점, 미만인 경우 산식에 따라 구매비율 0.1% 당 약 1.67점씩 감점하고 있다([그림 27] 참조).
- 총 구매액은 기관별 절대 규모 및 조달실적 정도에 따라 평가 편익이 발생하므로 전년도 대비 10% 이상의 구매실적 증가율인 경우 만점, 미만인 경우 실적 증가율 0.1% 당 0.5점을 감점하고 있다.
- 다만, 총 구매액 비중 3% 이상인 경우 구매액 향상도 달성 수준과 상관없이 만점을 부여한다.

평가지표	1.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50점)	평가지표	2.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향상도(50점)
측정산식	○ $X = (\text{'17년도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text{'17년도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 \times 100(\%)$ <평정점(P) 산출공식> - $X < 3, P = 50(\frac{X}{3})$ - $X \geq 3, P = 50$ •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은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 총액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기준 참조,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은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공사 금액)	측정산식	○ $A = [(\text{'17년도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text{'16년도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text{'16년도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times 100(\%)$ <평정점(P) 산출공식> - $A \leq 0\%, P=0$ - $0 < A < 10\%, P=5A$ - $A \geq 10\%, P=50$ • '17년 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의 경우 동 지표를 제외한 '이행도'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1.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 3% 이상 : 일괄적으로 만점 50점 부여 2.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 3% 미만 : 위 산출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1. '17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X)이 3% 이상인 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감액과 무관하게 만점 50점 부여 2. '17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X)이 3% 미만인 기관의 경우: 위 산출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16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0원인 기관인 경우, '17년도 구매율에서 '16년도 구매율을 차감한 수치(%P)를 A로 간주하여 향상도 산출공식 대입
평가자료	○ 구매실적 자료	평가자료	○ 구매실적 자료

[그림 27]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지표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총 구매액(물품+용역+공사 구매 합계액)의 7%를 기준으로 구매비중에 따른 평점을 하고 있는 세부 평점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중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그림 28] 참조).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기준 대비 총 구매액 산정이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목표 기준치 7% 적용 시 물품+용역 총 구매액 기준 약 14%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수준이다.
-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이외, 지방자치단체장 소관의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실적도 인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평가지표	사회적 경제육성	가중치	측정방법	<주의>
○ 산식	①-1 사회적기업(물품·용역·공사) 구매액: (사회적기업 구매액/총구매액)×100 ○ 산식 설명 <사회적기업> ○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 용어 정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에 근거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업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참조 ○ 부처요구: 7% ①-1 사회적기업 구매액 - 총 구매액: '17년도에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총액 - 사회적기업 구매액: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용역·공사)의 구매액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액 + 인증사회적기업 구매액) ※ 고용노동부 공공기업DB와 e-호조에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를 비교하여 자동 산출		○ 평가대상 - ①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7.12.31.	<주의> - 총구매액, 사회적기업 구매액: e-호조 자료 기준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품의유행을 반드시 정확히 선택하여 품의하여야 함 (물품은 "물품구입, 관급자재", 용역은 "용역, 수리수선"으로 품의) - ex) 청소용역 등 용역(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품의유행을 "용역"이 아닌 "일반지출"로 선택할 경우 e-호조 시스템 총 구매액 산정 시 용역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일반지출'로 품의하여 e-호조 시스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생산품'의 '일반'으로 금액이 산출된 경우, 그 금액만큼 '총구매액'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총구매액을 보정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 등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구매실적으로 인정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된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사업개발비 지원금, 사회보험료는 구매와 관련 없음(총구매액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에서 모두 제외해야함)

[그림 28]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평가지표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및 출연한 공사, 공단 등을 포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은 “정부권장정책” 평가항목으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에 대해 총 2.0점을 배점하고 있다.
- 총 구매액 산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와 동일한 물품+용역 기준으로 1%구매를 목표치로 하고 있다.
- 또한, 자치단체 평가기준 대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모두 포함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실적도 반영하고 있다.

지 표 명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정책준수	
가 중 치	20점	지 표 성 격	정 량	평 가 방 법	단 계 별 평 가
지 표 정 의	○ 정부권장정책의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관련법령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정부권장정책의 이행여부를 평가				
	지 표 명	지 표 성 격	정 량	평 가 방 법	단 계 별 평 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공기업의 구매대상 품목의 중소기업 대비 구매 실적률	· 전년 대비 중중장예인생산물 구매실적 증가율 · 중소기업(공사제외) 대비 중중장예인생산물 구매목표 비율 달성률
	중중장예인 생산물우선구매	20	중중장예인생산물 우선 구매 특별법	· 전년 대비 중중장예인생산물 구매실적 증가율 · 중소기업(공사제외) 대비 중중장예인생산물 구매목표 비율 달성률	· 해당 공기업의 구매대상 품목의 중소기업 대비 구매 실적률 · 전년 대비 구매비율 증가율
	장애인 의무고용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상시근로자(50인 이상) 총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	· 해당 공기업의 구매대상 품목의 중소기업 대비 구매 실적률 · 전년 대비 구매비율 증가율
	녹색제품 우선 구매	20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해당 공기업의 구매대상 품목의 중소기업 대비 구매 실적률 · 전년 대비 구매비율 증가율	· 해당 공기업의 구매대상 품목의 중소기업 대비 구매 실적률 · 전년 대비 구매비율 증가율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	20	사회적기업육성법	· 물품·용역(공사제외) 총 구매액 중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용역 구매비율(%)	· 물품·용역(공사제외) 총 구매액 중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용역 구매비율(%)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20	합동조합기본법	· 물품·용역(공사제외) 총 구매액 중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용역 구매비율(%)	· 물품·용역(공사제외) 총 구매액 중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용역 구매비율(%)	

○ 환산점수 = 지표별 취득점수 합계 / 적용 지표수			
지 표	산 식	비 고	
중소기업 제품	$P = 14 \left(\frac{X}{A} \right) + 0.6 \left(\frac{Y}{10} \right)$ (단, $\frac{X}{A} \cdot \frac{1}{10}$ 의 최하위값은 1 천분도 실적이 없는 경우 $A=75$)	X= 자립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 대비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Y=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A= 최근 3년간 평균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구매를 통계자료가 211년 자료만 있는 경우 211년 평균 구매율 A= 11.1%, 85% 중 낮은 값	
중중장예인 생산물	$(0.7X+0.3Y) \times 2점$	X= 총 구매액(공사제외) 대비 중중장예인제품 구매 액비율, 1%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Y= 전년 대비 증가율(3, 3% 초과시 최고값 1부여 · Y값의 경우 0점식 부여	
녹색제품	$(X+2Y) \times 2점$	X = 구매대상 품목의 총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 80%이상은 경우 최고값 0.8 부여 Y = 전년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 단, 구매비율이 80%이상이거나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최고값 0.1 부여	
장애인 의무고용	$X=0 \rightarrow 0점$ $0\% \leq Z < 0.0\% \rightarrow 2330 \times 0.0점$ $X \geq Y \times 3.0\% \rightarrow 20점$	X = 6월과 12월의 장애인근로자수 합 Y = 6월과 12월의 상시근로자수 합 $Z = X/Y \times 100\%$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 조합 생산품	$X \times 2점$	X = 총 구매 물품·용역(공사제외) 대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용역 구매율(%) · 1%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 사회적기업 =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부 인증사회적기업 + 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각 지표별 점수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그림 29]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3.2.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개선 시사점 도출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총 구매액의 경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나 “물품+용역”과 “물품+용역+공사” 기준 채택에 따라 약 50%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경제기업 업종 다양화로 총 구매액에 공사부분이 포함될 필요는 있으나, 공사 구매액 포함 여부에 따라 전체 실적과 지표의 변동폭이 과도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목표기준치의 경우, 평가지표 채택 시 만점기준이 1~7%로 범위가 매우 넓고,

실적인정범위에 따라 달성 난이도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총 구매액과 연계하여 기관 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 세부평가방법에 있어, 대부분 구매실적 비율로만 평가하여 기관 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어 단순실적평가 중심이 아닌 실질적 구매향상도 평가를 통해 특정 목표치를 현상유지하는 고착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적용대상의 경우, 기타공공기관 평가기준이 17년 이후 소관부처 전환, 지방의료원의 소관부처 전환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 평가지표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 수주 가능성 높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통일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실적인정대상에 있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여부에 따라 구매실적 비율의 평가기준점이 달라 외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총 구매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실적인정기업 범위 확대 수준에 따라 명목상 구매실적과 구매비율 대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실효성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표 27]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활용 시사점

구분	현황	시사점
총 구매액	■ 총 구매액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나 “물품+용역”과 “물품+용역+공사” 기준 채택에 따라 약 50% 변동	■ 사회적경제기업 업종 다양화로 공사 부문 포함 필요하나 공사 구매액 포함 여부에 따라 전체 실적과 지표의 과도한 변동폭 조정 필요
목표기준치	■ 평가지표 채택 시 만점기준이 1% ~ 7%로 범위가 매우 넓고 실적인정범위에 따라 달성 난이도 편차 발생	■ 총 구매액과 연계하여 기관간 객관적 비교 가능한 목표치 설정 필요함(사실상 법정구매목표비율 역할)
세부 평가방법	■ 구매실적 비율과 향상도 평가 보완성 있으나 대부분 구매실적 비율로만 평가, 기관간 편차 심화	■ 단순실적평가 중심이 아닌 실질적 구매향상도 평가를 통해 특정 목표치 현상유지 고착화 가능성 해소
적용대상	■ 기타공공기관 평가기준이 17년 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수주 가능성 높은 기

기관	소관부처 전환, 지방의료원의 소관부처 전환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실적 평가지표 활용도 저하(기타공공기관 210개, 전체의 25.2%)	타공공기관에 대한 통일된 평가지표 마련 및 공통 활용 필요성
실적인정 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여부에 따라 구매실적 비율의 평가기준점이 달라 외적 타당성 부족	■ 총 구매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실적인정기업 범위 확대 수준에 따라 명목상 구매실적과 구매비율 대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실효성 불명확

3.3. 소 결

- 본 장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 수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도별 기관평가에 적용되는 평가체계에서 우선구매 달성 수준 등에 따라 평가하는 항목과 배점 및 세부적용기준 등에 대한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정부업무평가, 기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소관부처별 기관평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실적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채택하고 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군구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합동평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평가기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 달성도, 개선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최소 1점에서 7점까지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공공기관별 적용되는 평가체계마다 평가항목, 평가산식, 배점 및 평점 방법 등이 상이하여 평가결과를 상호비교분석하여 적정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 대표적으로 실적 산정기준이 “물품+용역”, “물품+용역+공사” 등 서로 달라 동일한 구매실적을 보유하더라도 실적 산정기준이 공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보다 2배 이상 구매비율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평점기준이 되는 구매목표비율 역시 1%에서 7%까지 편차가 매우 커 우

선구매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 한편 구매실적 평가방법이 대부분 전년도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및 용역 구매액 대비 당해연도 늘어난 비율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대상 기관의 공공조달 규모, 사회적경제기업 생산물품의 활용수준 등에 따라 과도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구매실적 증가비율 이외에 고용 및 처우개선 등 공공구매의 정책적 목적 및 취지 구현도를 평가하는 지표 개발과 반영이 요구된다. 또한 평가대상 기관 중 소관부처의 개별 평가에서 우선구매실적이 반영되지 않거나 여부가 불확실한 기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 평가체계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 집계대상이 통일되지 않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범위가 넓어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된 구매실적을 산출하는 경우 구매비율에 비례하여 축소되는 등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4장.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4.1.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 최근 4년간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우선구매 실적자료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운영현황과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었다.

[표 28]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조달 우선구매 실태

구분		현황 및 실태	문제점	시사점
정량적 분석 차원	적정한 공급기회 확보	최근 4년간 인증 사회적경제기업 중 공공조달 공급실적 보유 업체는 약 50% 내외 수준	표면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증가와 개별 사회적경제기업 체감도 괴리현상 심화	사회적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공공조달 미활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규진출 집중 지원 필요
	우선구매 제도의 운영 실효성	사회적경제기업 중 공급실적 상위 10%기업이 전체 공급실적의 약 70% 점유하고 하위 50%기업은 약 3%미만 점유	공급실적 기준 상·하위 업체간 과도한 공급실적 편차는 정책지원의 효과의 편중 및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수한 공급역량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함께 대다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급기회 보장 필요
	다양한 구매/공급경 로에 대응한 차별적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시 계약과 비계약 방법이 약 65:35 비율로 비계약적 구매/공급경로 비중이 높음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판로지원 방안의 중점이 입찰 및 계약적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	사회적경제기업이 상대적 경쟁우위가 있는 용역 분야 중 교육, 돌봄, 사회복지서비스는 비계약적 방법인 민간위탁/사업자공모 등을 통해 이루어지나 체계

				적인 활용 지원 미흡
	공공기관의 소액단순구 매 활용방법의 중요성	계약방법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중 건수 기준 약 30% 이상이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소액단순구매로 수기거래 방식임	공공기관별 일반적 100만원 이하 최대 500만원 이하의 구매건은 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않은 소액단순구매로 구매담당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집행 가능함	수기거래방식의 소액단순구매는 활용방향성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해당 구매수요 전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역의 경우도 성립함
	공급 상품의 낮은 경쟁적합도	주요 공급상품이 종이류, 화장지류, 서적, 인쇄서비스, 청소, 경비 및 시설물관리서비스 등 단순한 저부가가치 특성 나타내며 기존 영세한 공급업체와 과당경쟁 불가피한 상황임	타 우선구매제도 지원대상 기업/단체,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과당경쟁 상품 중심의 공급구조로 인해 공급규모 확대 가능성 제약	다수 공공기관이 일상적/반복적/상시적으로 수요가 있는 상품에 대한 공급진입 장벽이 낮고 가격 중심의 경쟁 심화로 우선구매 질적 성과 저하(상품 공급하더라도 적정 이윤 확보 곤란)
정성적 분석차 원	계약방법의 집행 다양성 확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경로 중 입찰 및 계약방법이 주를 이루나 타 계약건 이행에 소요되는 물품과 용역을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토록 하는 방법이 약 40% 수준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음	계약방법을 통한 물품 및 용역 공급 희망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입찰 및 계약하는 방식을 전제로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타 기업의 계약이행시 하도급 형태의 참여를 통한 공급기회 활용도 저하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하도급 형태로 타업체의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공급이 보다 수월하게 공급기회 확보가능성 확대(적정한 하도급 계약조건을 전제로 함)

(1) 구매경로별 차별적 구매지원 및 교육

-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은 입찰 및 계약에 의한 방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6년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및 공모사업 등과 같은 비계약적 방법을 활용한 우선구매 추진방안과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했듯이 우선구매 실적의 약 65% 내외는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35%는 비계약적 방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이후 비계약적 방법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체적인 구성 비중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0] 참조).

현황/문제점

-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는 입찰 및 계약의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계약법령 적용 이외 지자체 중심의 공모사업 형태의 민간위탁이 약 38% 이상 차지함
- 또한 입찰 및 계약의 방법과 관련해서도 2017년 이후 소액의 조달수요에 대한 비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단순구매가 전체 계약실적의 약 58.6%(사회적기업), 30.8%(사회적협동조합)

✓ 판단근거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 분석(p.14, 15, 18)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p.43)

개선방안

- 수요기관의 주된 구매경로 중 상대적 지원이 부족했던 비입찰 및 계약방식인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구매확대방안 강화 필요(민간위탁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지역기반 사업성 용역으로 기획 확보 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참여 가능)
- * 사회적협동조합 중심 민간위탁 부문 활성화 노력이 2016년도 이후 본격화 되고 있고 최근 지자체별 돌봄, 청소 등에 적용 확대 중이나 상대적 공급역량 부족(품질보증체계 미흡 등)과 정부의 직접고용 정책 영향으로 이를 고려한 대안적 서비스를 공공기관(LH의 “임대주택입주청소서비스” 등)의 협업을 통해 개발 필요
- 나라장터와 같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지 않는 500만원 이하(주로 100만원 미만)의 수기계약을 통한 단순구매 수요에 대하여 신생/소규모 사회적기업 중심의 접근성을 높여 사실상 사회적기업 전용구매 방법으로 활용(소액 단순구매는 사실상 공공기관 담당자의 재량으로 구매의사 결정 가능)

[그림 30]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공급 경로 현황과 개선안

- 따라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경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공급경로로서 비계약적 방법(민간위탁, 공모사업 등)을 활용한 우선구매 활성화 및 지원방안 마련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교육, 돌봄 및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 서비스 및 시설운영 위탁 등을 사회적경제에 적합한 분야로 보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계약에 의한 방법은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입찰에 적용되며 물품, 용역 및 시설공사 등 모든 조달대상물에 적용되고 있으나, 주로 단년도, 당해 입찰 건에 한정된 공급(계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사회적경제기업은 입찰 및 계약의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급 물품 및 용역과 관련한 기존 공급자와 영리기업 등과의 경쟁에 있어 상대적인 불리함을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보완하여 공급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31] 참조).
- 반면 민간위탁과 공모사업의 경우는 비계약적인 방법으로 위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에 있어 기본적으로 계약법령이 아닌 해당 사업 관련 법령 또는 소관 부처와 집행 기관(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돌봄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시설물 등의 운영위탁 용역이 해당되며, 대부분 다년도의 복수 입찰 건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의한 방법과 달리 민간위탁과 공모사업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중요성과 관련 소관부처의 규정과 기준을 충족하는 특별한 공급자격을 갖추어야만 참여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따라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에 보다 적합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요도 많은 민간위탁과 공모사업에 참여기회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과 실행방안 수립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전국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주요 위탁 및 공모사업에 대한 DB를 구축한 후, 시기별 관련 법규 및 사업정보를 선제적으로 통합제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상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공급 적합도가 높은 용역분야의 매년 상시/반복적인 위탁/공모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공급기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년도 및 연중 지속 공급기회 확보를 위한 장기/연간단가계약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 민간위탁 및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이 아닌 위탁/공모 사업 유형별 고유하고 전문적인 참여자격 및 수탁요건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입

찰 및 계약 과정에서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지원과 동일하게 개별 민간위탁/공모사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위한 참가자격, 평가 우대방안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계약방법 중 2017년 이후 공공기관별 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소액구매 계약건수가 사회적기업의 경우 약 59%,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약 31%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계약에 의한 방법 중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우선구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액단순구매에 대한 신생 및 소규모 사회적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조달 실적 확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입찰 및 계약	민간위탁/공모사업	지원 및 교육방향성
적용 법령	▪ 국가 및 지방 계약법령 및 예규	▪ 위탁 및 사업 공모 소관 중앙행정부처, 집행기관의 사업관련 법령/지침 및 사업계획	▪ 전국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주요 위탁 및 공모사업 DB 구축 후 관련 법규 및 사업정보 시기별 선제적인 통합제공
주요 공급 대상	▪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모든 유형의 조달 대상물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연간상시/반복적인 용역성 업무 ▪ 보건, 의료, 환경 등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용역	▪ 사회적경제기업이 상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공급 적합도가 높은 용역분야의 안정적인 공급기회는 매년 상시/반복적인 위탁/공모형 사업을 통해 확보 가능
계약 기간	▪ 대부분 단년도/단건 계약	▪ 대부분 다년도/복수건 계약	▪ 다년도 및 연중 지속 공급기회 확보를 위한 장기/연간단기계약 지원
공급 자격	▪ 물품, 용역, 시설공사 업종별 일반적 공급 자격 확보 시 가능	▪ 위탁/공모 대상사업별 별도의 특정한 공급자격/시설요건 요구	▪ 일반적인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이 아닌 위탁/공모 사업 유형별 참여자격 및 수탁요건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
경쟁 환경	▪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인 경쟁열위에 있으나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한 보완 가능	▪ 공적전달체계에 속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선점	▪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우선구매제도와 동일하게 개별위탁/공모사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위한 참가자격, 평가 우대방안 협의

[그림 3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계약 및 비계약 활용 특성과 향후 지원방안

(2) 사회적경제기업 공급역량(성능/품질) 관리 체계

-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품질, 성능 및 종합적 만족도에 대한 “기대(사회적경제기업 평점) - 만족(공공기관 평점)” 불일치 격차가 약 1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10% 내외 수

준으로 품질과 성능에 대한 수요자의 민감도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큰 인식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실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어야 할 내용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관리체계 마련이 약 26.3%, 공공기관의 수요적합도 높은 상품 공급이 25.3%로 응답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 이처럼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하는 양질의 제품에 대한 요구수준이 전체 응답 공공기관의 약 52%인 점은 여타 활성화 요인보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그림 32] 참조).
-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품질, 성능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타 우선구매대상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등과 대비한 공공기관의 선호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설문조사결과 대표적으로 언급된 사회적가치구현, 일자리 창출통한 정부정책기여, 지역사회 경제기여도 등과 같은 고유한 정책지원 목적과 취지 구현도 함께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황/문제점

- 사회적경제기업과 수요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성능 및 종합 만족도에 대한 “기대-만족” 불일치 편차는 약 1점 정도로 수요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에 대해 낮은 품질수준 불만은 실제로는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소요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체계” 도입이 전체 응답기관의 약 30% 이상이 선택한 결과를 고려할 경우 수요기관의 성능, 품질 만족도 제고 필요

✓ 판단근거

- 공공(수요)기관 우선구매 설문조사 결과(p.31, 33)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p.48)

개선방안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물품 및 용역별 사회적경제기업 공급 상품별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사회적경제기업 인증과 연계하여 활용
- 중기간경쟁제품 공급시 직접생산확인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로 공급하는 물품/서비스에 대해 표준 및 관리체계를 만들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품질평가 및 관리 수단을 마련하여 상시적 모니터링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기업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소기업 특화 품질관리체계 개발 및 시범사업 사례 참조

[그림 32] 사회적경제기업 품질/성능/종합만족도 인식 현황과 개선안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생산 물품과 용역에 대한 품질관리, 사회적기업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가치 구현, 취약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 고용, 지역사회 기여도 등과 같은 요인을 평가하여 그 수준을 인증하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 도출된 평가체계를 “사회적경제기업 공급역량 평가(가칭)” 등으로 명명하고, 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지원조직을 통해 평가 및 관리하고 등급 인증 수준에 따라 우선구매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롭게 구축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 플랫폼”인 SEPP를 통해 우수한 공급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적경제기업 공급역량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개략적으로 검토해보면, 평가차원으로는 사회적가치 구현도, 품질/기능 충족도, 가격적합도, 거래신인도 등의 4개 분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적가치구현도는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사회적가치 구현도 평가체계와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품질 및 기능에 대한 충족도는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만족도와 규격서 등 품질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타 우선구매제도 대상 기업/단체와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다.
- 가격적합도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약 27%)으로 제시한 것으로 품질 및 성능 등을 고려하고 기존 공급업체들과 비교한 적정 가격수준임을 보증하는 것으로 구매담당자의 현실적 어려움인 “고가구매”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평가차원이다.
- 마지막으로 거래신인도 평가차원은 설문조사결과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에 있어 공공기관의 애로요인 중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우수한 공급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부족(23.6%),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물품 및 용역 정보부족(20.3%) 등의 개선과 연계하여 우선구매 활용과정에서 축적된 계약이행 신뢰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사회적경제기업 공급역량 평가(가칭)체계 구성

(3) 복수우선구매자격 사회적경제기업 실적 관리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우선구매제도는 매년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에게 당해 연도 구매실적과 차년도 구매계획을 보고하는 형태로 우선구매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는 “사회경제적배려”라는 동일한 정책적지원 속성을 지닌 우선구매 대상 기업/단체/조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기관별 제한된 구매수요 품목과 구매예산 등의 제약으로 우선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우선구매에서 실적과 계획은 중복계상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기업이면서 여성기업 인증도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5천

만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 5천만원, 여성기업 우선구매실적 5천만원을 각각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이 최근 우선구매제도 대상에 포함된 지원 대상인 경우 선행 타 우선구매제도의 지원 대상 자격(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구매실적이 허수로 크게 부풀려질 가능성이 높다.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자료 분석결과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 중복인증을 보유한 비율이 2017년 기준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약 10.2%에 달하고 이들 중복 자격 보유 기업의 공급실적은 약 2배에 가까운 18.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4] 참조).
- 이는 최근 4~5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급속한 우선구매실적 확대 추세를 보이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내실 측면에서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현황/문제점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의 구매수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 우선구매 자격을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각각의 보유자격별 우선구매실적으로 중복 인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우선구매실적 집계 시 중복인정으로 최종 실구매 대비 2~3배의 초기 실적 집계 현상 발생
- 2017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경우 복수우선구매자격 업체비중 10.2%, 실적기준 18.4%로 우선구매 공급실적의 약 20% 이상이 사실상 타 우선구매자격을 보유한 기업이 편취하는 현상 심화되고 있음

✓ 판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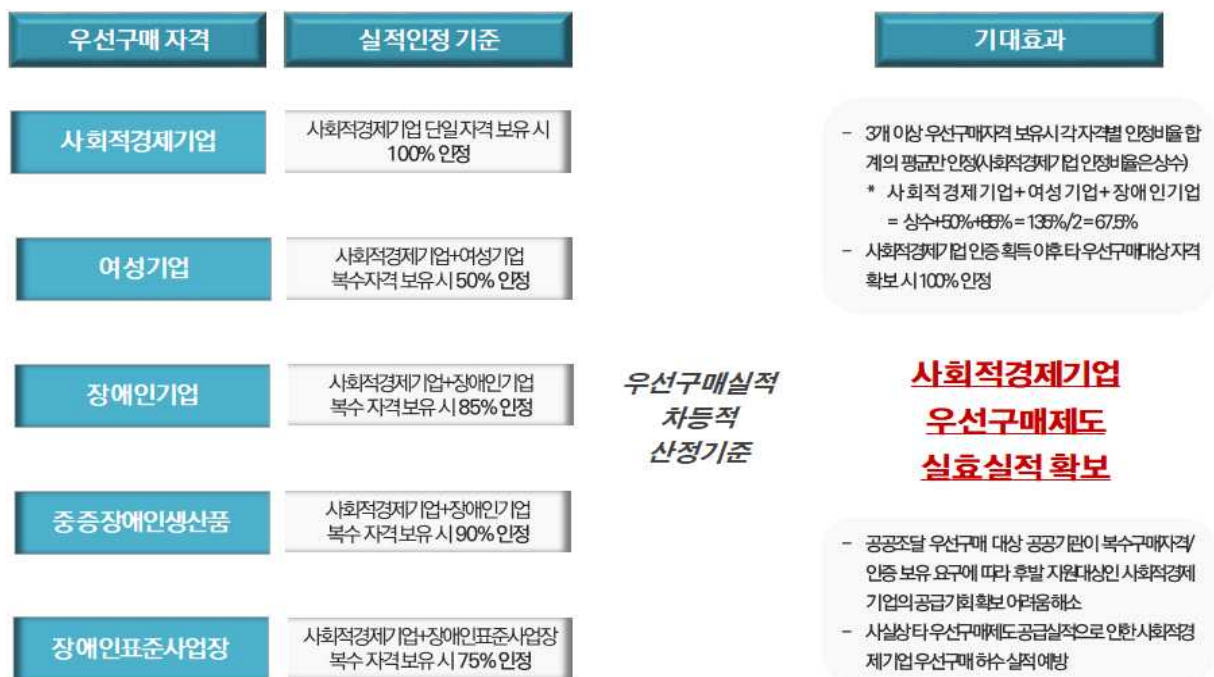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분석(p.23, 46)

개선방안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 집계 시 사회적경제 영역 이외 우선구매 자격을 복수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 실적은 완전히 인정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자격 보유 수에 따라 “1/n”차감방식 적용함
- 특히, 소규모/신생 사회적기업 공급 가능성 높은 소액 단순구매(수기계약) 건에 대해서는 복수 우선구매자격 보유 사회적경제기업 실적 인정을 배제하여 순수한 사회적경제 영역내 기업에게 실질적 구매기회 확대
-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등록(2019년 이후 제도 시행시)시 신규 창업이 아닌 경우 인증/등록 제외
- 사회적경제우선 구매실적 보고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분석 및 평가시스템 마련
 - *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실적 교차보고 제도와 세금계산서 실적 증빙자료 확인 체계 마련

[그림 34] 복수 우선구매 자격 보유 현황 및 개선안

- 상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복수의 우선구매자격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실적에 대해서는 타 우선구매 구매실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으로 등록한 경우 타 우선구매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소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여 현실적 이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 그러나 우선구매실적 중복인정 불허 원칙 적용은 표면적으로는 구매실적 부풀림 현상은 해소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이 축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에서 복수 구매실적 인정 우선구매대상의 상품을 우선구매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구매제도간 구매실적 중복인정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근본적인 우선구매 실적 중복인정 문제해소 방안을 도출하기 전, 단기적으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관점에서 복수구매자격 보유 기업의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여 실적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35] 복수 우선구매 자격 보유 시 실적 인정 할인율 적용방안

-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기업이 단독으로 구매자격을 보유할 경우에는 실적을 100% 인정하고, 여성기업으로 복수자격인 경우에는 실적의 50%,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단체로 복수자격인 경우 실적의 95%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할인율의 산정은 복수 구매자격(인증)별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에서 차지하는 중복율과 ‘사회경제적배려’ 범주에서 정책적 지원 적합도를 고려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5] 참조).

(4)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표준화 및 고도화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앞서 살펴본 공공기관의 연도별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보고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함께 보고된 실적 달성도에 따라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평가 시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기관평가가 존재한다.
- 각각의 기관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 달성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채택하고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는 자치단체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이며 나머지 평가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 또한 평가항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관평가 지표에서도 평가항목, 배점, 평점 산식과 모수 기준값 등의 다양성이 매우 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절대적 실적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정책지원 항목으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에 대해 총 구매액의 3%를 초과하면 배점한도(2점)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모수값 중 총 구매액은 물품과 용역만을 포함하고 있다.
- 반면, 자치단체합동평가에서는 총 구매액을 물품, 용역 및 시설공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구매실적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외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하여 인정하면서 7% 이상 구매 시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그림 36] 참조).

- 상기 경우를 비교해보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비율이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각각 3%라고 할 경우 절대값으로는 동일하더라도 상대적인 구매실적과 비율로 보면 2배 이상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는 총 구매액 산정에서 물품/용역과 공사의 총 구매액 구성비율이 55:45 정도로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약 2배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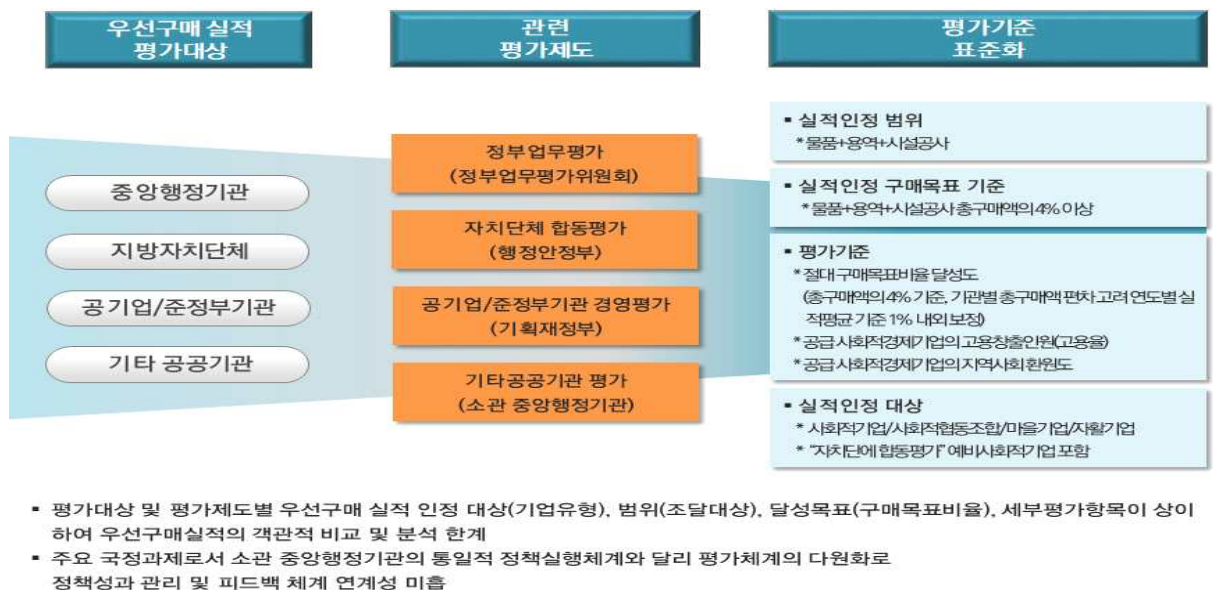
현황/문제점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을 기관 평가지표 활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광역/기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의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평가항목, 산정기준, 배점비중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결과와 비교 가능성과 타당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소관 부처별 평가로 대부분 미반영 경향(평가기준/결과 미공개 기관 절대 다수) ▪ 평가지표의 경우 단순 구매실적, 구매향상도 등으로 실효성이 한계체감하고 수요기관의 수동적/피동적 구매 유도 ▪ 총구매액 산정 기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의 반영 조합에 따라 실적비율의 산정결과가 2배 이상 편차가 발생하고 동시에 인정범위 대상에 인증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여부에 따라 과도한 편차
✓ 판단근거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활용 현황 시사점(p.60)
개선방안
▪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구매실적을 활용한 평가체계(평가항목, 배점비중, 평가산식, 평가모수값 등)에 대한 표준안을 도출하여 4대 부문 기관평가에 반영토록 함(부문별 평가 여건을 고려하여 실적 인정시 가중치 부여하면 서로 다른 구매환경 보정 가능) ▪ 기관평가지표 및 결과 미공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경제구매실적 기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보고 의무화(우선구매실적 보고와 연계 추진으로 공공기관 부담해소) ▪ 평가항목 표준화 추진 시 단순 구매비율과 전년도 대비 구매향상도 공공조달 시장 특성상 한계체감 후 지속적 증가 한계점 존재하므로 수요기관이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적합한 물품과 서비스 개발 후 구매한 실적에 가중치 부여 필요함(평가항목으로 “사회적경제제품 개발도”등으로 반영) * 수요기관의 적극적 구매의지를 촉진하면서 현행 구매비율과 구매향상도 대비 수요기관의 구매규모 및 구매 가능물품에 의한 기관별 편차를 완화 가능함

[그림 36] 우선구매 실적 평가지표 활용현황 및 개선안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각종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는 평가항목, 평점산식 및 평점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전체 배점에서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배점수준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채택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예를 들어 실적인정 범위는 기존 물품과 용역 총 구매액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4년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분석을 통해 공사 구매실적 역시 연도별 구매실적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실태를 반영하여 “물품+용역

+공사”의 총 구매액을 기준으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실제 총 구매액은 연도별 전체 공공조달 실적과 일부 10% 내외 금액 편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각종 우선구매제도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 용역, 시설공사 구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방산물자 조달금액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주어진 배점한도의 만점기준이 되는 구매목표비율의 경우는 물품+용역+시설공사 총 구매액의 4%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절에서 검토하는 적정 구매목표비율 산정방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4% 정도가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3% 수준 반영 대비 약 2.5배 정도 목표비율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세부평가 항목의 경우도 기존 채택하고 있는 절대 구매실적 달성율과 향상을 이외에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기여도로 평가하는 고용창출 수준과 지역사회 환원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기준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주 역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확대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평가에서만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실적 인정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7] 참조).



[그림 37]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표준화 방안

(5)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적정 목표비율 설정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 같은 타 우선구매제도와 달리 구매목표비율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법정구매목표비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구매 대상으로 권고적 효력만 있다. 통상적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 평가지표의 평점산식에서 3%를 만점부여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3% 내외를 일반적 권고수준으로 보고 있다([그림 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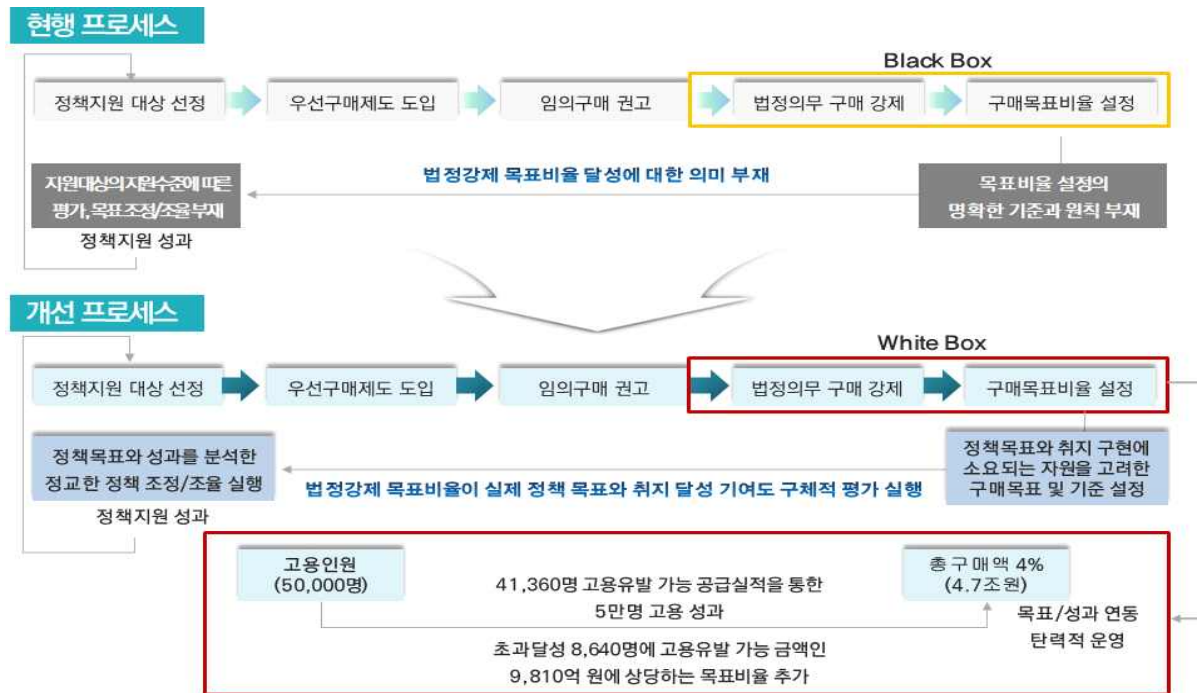
현황/문제점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는 법정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로 현재 연도별 실적집계(물품+용역)시 2017년 2.05%, 2016년 1.79%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부재함(중장기적 구매 목표 관리 및 전략수립 한계) ▪ 사회적경제기업의 강점 중 하나가 지역기반의 고용창출(EU는 “노동(고용)통합사회적기업” 명명)효과이니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준으로 적정구매 수준과 목표비율 설정 필요
✓ 판단근거
- 공공(수요)기관 우선구매 설문조사 결과(p.31)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p.43)
개선방안
▪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은 2016년 고용인원이 약 4.1만 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취업유발계수 활용하여 역산하면 약 46,590억원의 생산액이 발생했을 때 고용 가능한 인원 $- 4,659 \text{ 취업유발단위} (46,590 \text{ 억 원} / 10 \text{ 억 원}) * 8.8 \text{ 명} (2013 \text{ 년 기준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 = 40,999 \text{ 명}$ ▪ 이를 2016년 공공구매실적(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공공구매실적 발표 자료 기준) 116.9조원(물품+용역+공사 우선구매 합계액)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3.98%로 약 4% 수준 ▪ 총 구매액을 “물품+용역” 합계액은 61.4조원으로 이 경우 구매비율은 약 7.59%로 약 8%수준으로 추산됨. ▪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 1% 이하/사회적경제기업 5% 이하 요구수준 고려 4% 설정(물+용+공) 검토

[그림 38]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운영현황 및 개선안

- 2015년 이후 연평균 약 30% 이상 구매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2016년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비율은 총 구매액 대비 약 1.80%에서 2.05%로 증가하는 확대 추세에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예산의 제약, 매년 예산증가율, 구매 수요물품의 확대 한계 등 지속적인 구매규모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정구매 규모에 대한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타 우선구매제도의 사례 등을 검토해보면 총 구매액 대비 일정 수준의 구매목표비율 설정 시 공공기관의 수요량, 지원대상 기업과 단체의 공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매목표비율이 설정된 것이 아닌 해외사례 또는 구매목표비율 설정이전 몇 년간의 평균 구매실적 변동 추세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

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구매목표비율의 설정은 구매실적이 낮은 경우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으나 목표비율을 달성할 경우 그 이후 구매실적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의 법정강제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한다면 반드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산정근거가 변동될 경우 연동하여 증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선구매실적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취지로 볼 수 있는 사회경제적약자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준으로 구매목표비율 산정을 검토할 수 있다.
- 2016년~2017년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대략 4만 1천명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도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취업유발단위는 4,659이다.
 - 2013년도 전(全)산업 기준 고용유발계수는 8.8명(생산액 10억원당 고용유발 인원)으로, 46,590억원의 공급실적(생산액)을 달성하는 경우 취업유발단위가 4,659가 되며 여기에 8.8명을 곱하면 40,999명이 산출된다.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급실적이 46,590억원이 되면 이는 2017년 총 구매액(물품+용역+시설공사 합산)기준 3.98%로 약 4% 수준이며 현행과 같이 물품+용역만을 합산한 총 구매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7.59%로 8%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 실제 체계적 산정기준에 따라 이러한 비율이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현실적 구매여력과 최근 4년간의 구매실적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약 4%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그림 39] 참조).
- 상기 과정을 통해 산출된 구매목표비율의 적용에 있어 기존과 다른 점은 확정적 계속기준이 아닌 산정의 핵심근거로 활용한 고용유발 효과의 증감에 따라 비례하여 구매목표비율 역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9]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목표비율 산정 프로세스 개선

(6)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지원 플랫폼 강화/실효성 제고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주요인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정보 및 구매지원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가장 대표적인 개선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사회적기업 실질적 품질 및 가격 비교를 통해 구매의사결정기능 지원 등 6건, 별도의 종합쇼핑몰 구축, 편리한 구매, 상품구색 다양화, 구매편리성 향상 6건, 종합정보망 구축 및 수요기관별 구매여건 변화를 고려한 평가, 사회적기업 유효성 실시간 확인체계 3건 등 총 12건으로 전체 67건의 활성화 요인 응답 중 22.4%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개선요인으로 식별되었다([그림 40] 참조).

현황/문제점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애로요인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지원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임
- * 역량 있는 공급업체 정보부족, 물품/서비스 정보 부족, 구매 수월성을 보장하는 판매접점 부족 등은 수요자 입장에서 구매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와 인프라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이 제약되고 있음을 시사함
- 평균 2년 내외 우선구매 담당자의 순환보직으로 연간 400억 원 내외 대규모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실적 달성 수요기관 담당자도 광역지자체별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기업과 생산 물품/서비스 정보부족 호소

✓ 판단근거

- 공공(수요)기관 우선구매 설문조사 결과(p.31)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p.49)

개선방안

- 832개 공공구매 의무 대상기관 담당자별 1:1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순환보직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담당자를 방문 하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제도 활용을 위한 설명 및 교육지원(지역별/시기별 신규 업무자 대상 통합교육으로 추진)
- 중앙집중적 사회적경제우선구매포털(SEPP) 구축이 외형적/물리적 측면에서 가시적 대안이나 지자체별 중간지원 기관을 활용하여 지역내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대면 설명 및 안내가 효과적
- 대면 지원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구매수요를 수동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연계 수준 벗어나 적극적 수요발굴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실질적인 공급기회 확대 제공 필요함

[그림 40]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지원 현황 및 개선안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각종 지원제도가 본격화된 지가 8년 이상 경과했지만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연간 수백억원 단위로 구매하는 공공기관과 담당자도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생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정보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동시에 편리한 구매를 위해 기존 사회적경제상품몰(e-store 365)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중간지원조직 등의 사업과 지원활동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담당자의 순환보직 등으로 관련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기에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정보와 실제 구매를 단일한 공간(온라인 웹사이트 등)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우선구매 지원 플랫폼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832개 공공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우선구매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등도 1:1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특정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보직 이동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요청 이전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 방향성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 한편, 현재 광역 시도 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및 용역 공급 기회만을 연계 해주는 수준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요적합도 높은 물품과 서비스를 보유하거나,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발굴하여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환 역시 필요하다.
- 특히 중간지원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라인 비대면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관련 정보제공, 교육지원 등의 방법보다 담당자가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대면 지원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관련 사업부서 담당자와 계약부서 담당자가 상이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방문 교육은 반드시 두 분야의 담당자 모두에 대해서 통합적인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구매수요가 있는 사업부서에 적극적으로 구매를 추진하더라도 계약부서 차원에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구매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이지 않으면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7)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상품 다양성/적합성 제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로 공급하는 물품은 종이류, 화장지류, 서적 등이며, 용역의 경우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부가가치가 낮으면서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나 타 우선구매제도 지원대상 기업/단체와 과당경쟁에 직면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다.
-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용역 중, 교육, 문화 어학서비스를 용역형태로 공급하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등을 통하여 돌봄 등 사회복지 관련 용역과 시설물 운영 등을 민간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례 등을 고려하면 용역의

경우 비교적 내실있는 성장과 경쟁이 가능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공급) 경로는 용역 중심의 민간위탁/공모사업 등의 방식이 전체의 38% 이상을 차지하여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과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그림 41] 참조).

- 한편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수요자인 공공기관 담당자는 사회적가치 구현에 적합한 물품과 용역을 개발 및 공급하거나 수요기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요적합도 높은 상품을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경쟁환경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존 선발자 또는 전문적 영리기업에 비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 또는 등록하는 단계에서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활용의사가 있는 기업/조합 등에 대해 그들이 계획하는 물품, 용역 등의 종합적인 수요현황과 경쟁구도에 대한 정보와 교육 등을 통해 타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진입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내에서도 과당 경쟁이 유발될 정도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 활용 계획이 있는 기업/조합에 대한 진입 제한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에서 비계약적 방법이 2017년 기준 약 3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각종 교육서비스,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과 같은 용역 및 관련 시설물 위탁 용역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및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 무엇보다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의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요기관의 수요적합도 높은 물품과 서비스 개발 전략을 채택하여 일반적 수요 물품이 아닌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진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적경제기업이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관련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하여 개발한 “임대주택 입주 청소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현황/문제점

- 사회적경제기업과 타 우선구매제도의 수혜 중복도 현상 초래 요인 중의 하나는 공급하는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히 일반 영리기업 중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급하는 종이류, 문구류, 청소용역 등에 한정되어 있어 기존 공급업체와 레드오션식 경쟁이 불가피적
- 특히, 기술적/품질적 진입장벽이 낮은 저부가가치 물품 중심 공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용역 중심의 공급기반 확보 미흡 현상 심화됨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경로 중 약 38%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방식은 대부분이 용역 수요이나 현재 공급역량으로는 기존 타 우선구매자격보유 기업등과 경쟁 한계

✓ 판단근거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공급경로 분석결과(p.14, 27)
- 수요(공공)기관 현행 우선구매 상품 설문조사 결과(p.36, 50)

개선방안

- 타 우선구매대상 기업과 공급 중복도 높은 복사용지, 화장지, 인쇄용지, 인쇄용역 등을 신규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 및 등록단계에서 상대적 경쟁력 있는 용역분야로 전환 유도
 - * 사회적경제지원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설립단계에서 공공조달 활용을 고려하는 예비창업자 상세한 창업정보 제공
 -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등록단계에서 과당/저가경쟁 상품 주공급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진입제한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경제영역에 적합한 용역 중심의 상품 공급역량 확보
- 수요기관과 연계하여 현존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 타 우선구매대상과 차별성 없는 공급방식보다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협업을 통해 기관의 수요특성과 기업의 공급특성이 매칭되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유도
 - * 수요기관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공급 개선점으로 사회적기업 특성 적합도 요구

[그림 4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급적합도 현황과 개선안

(8) 사회적경제기업의 단계적 성장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은 정책적 지원 대상에 대하여 판로지원 방식의 우선구매제도 운영의 목적과 취지는 설립/창업초기 경영안정성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유효경쟁력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이 핵심이다.
- 실제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취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활용 이유로 “안정적 판로 수요확보로 기업과 조합의 지속 가능성 확보” 약 27.4%, “공공조달시장 지속적 참여 가능” 약 22%로 응답한 결과를 통해서 지원 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도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중 향후 기업과 조합의 부가가치창출 전략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수요 물품 및 용역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구현” 약 27.8%, “기존 공공수요 물품 및 용역의 기능/성능/품질 향상하여 경쟁우위 갖춘 공급” 약 27.1%로 현행 공공조달 시장수요에 기반하는 공급구조

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54.9%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수요에 적합한 사회적가치 구현 가능 물품 및 용역개발을 통한 공급” 약 32%를 포함하면 87%가 공공조달 시장에 기반한 운영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1섹터)과 민간부문(2섹터)의 교집합적 영역 또는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는 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제3섹터)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림 42] 참조).

- 현실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에서 공공과 민간 어느 쪽에 분명히 속하지 않거나 걸쳐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의 역할을 일부 대행해주는 형태로 고착화하여 실행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궁극적 지향점과 괴리를 발생시키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유사한 사회적가치를 표방하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실제 분석결과 우선구매 실행과정에서 경쟁 및 갈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제3섹터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도약대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력은 민간영역까지 아우르는 사업/운영구조를 확보할 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구매제도 활용 등을 통해 종합적인 역량이 향상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접점(민간기업 등)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기업/조합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그림 42] 참조).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역시 최종적인 판로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아닌 판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업과 조합의 경영 및 운영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 지원 및 지원사업을 단계적, 연속적으로 간단없이 지원함으로써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황/문제점

-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은 사실상 공공(제1섹터)과 민간(제2섹터)이 아닌 교집합적 제3섹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1섹터에 과도하게 집중하는(초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강조 결과) 경향을 보임
 - * 비즈니스 측면에서 제3섹터는 공공과 민간의 공사합동출자 법인으로 공적영역 현안 공동해결 역할 강조
- 설문조사 결과 약 87%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향후 부가가치 창출전략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물품과 용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액 확대를 채택하고 있는 점은 제3섹터의 정체성 저하 및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도 확보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됨
 - ✓ 판단근거
 - 공공(수요)기관 우선구매 설문조사 결과(p.31)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설문조사 결과(p.43, 47)

개선방안

-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역량을 평가하여 수준별로 공공조달시장 참여비율을 제한하면서 민간영역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차등적 지원방안 마련
 - * 예) 매출액 100억 원 이상/주요 공급상품 민간시장 수요도 50% 이상 요건 갖춘 기업은 창업초기 7년 이후 민간 매출비중 70% 이상 요구
 - 민간시장 영역 소요 상품 공급 중심 기업은 민간부문 경쟁력 제고
 - * 예) 매출액 30억 원 이하/주요 공급상품 공공시장 수요도 50% 이상 요건 갖춘 기업은 창업초기 7년 이후 공공 매출비중 50% 이하 요구
 - 공공시장 영역 수요 높은 기업은 공공시장 참여 유지하나 후발 주자 위한 참여 제한제(쿼터제) 도입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는 공공조달 재원을 활용한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제도적으로 단계별 성장 유도정책 실행
 - * 한정된 공공조달 재원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수요로 지원실효성 한계체감 현상 직면

[그림 42]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활용 성장전략 현황 및 개선안

(9)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참여공유/제한제 도입

- 앞서 살펴본 사회적경제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우선구매 참여공유제와 참여 제한제도의 도입이다. 최근 4년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적자료 분석결과, 상위 10%기업이 전체 우선구매 실적의 약 70%, 하위 50%의 기업이 3%내외의 공급실적을 점유하는 매우 심각한 편중 및 왜곡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 한편, 결과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들의 노력을 통해 확보한 공급실적을 인위적으로 조정 및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영리기업 등의 경우에는 일견 타당성을 가지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목적과 취지는 사회적가치 구현에 소요되는 물적, 인적, 제도적 자원을 확충함에 있어 공공재원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생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소위 “경쟁의 원리”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특히 공급실적 기준 하위 50%의 업체는 최소한 우선구매를 경험한 업체이며 전체 사회적경제기업 중 50% 이상이 공공조달을 통한 우선구매제도 활용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급실적의 과도한 편차와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스스로의 공급역량 향상에 대한 동인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현황/문제점
▪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상위 10% 공급실적 보유업체가 전체 공급실적의 약 70% 내외를 점유하는 수혜규모 편중현상이 최근 3년간 지속 ▪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절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은 전체 공급실적의 약 3%,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 수준에서 공급실적 보유 ▪ 타 우선구매제도에도 상위 소수 업체의 공급실적 독과점 현상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와 우선구매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하위 50%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판단근거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공급경로 분석결과(p.19, 20, 22, 23)
개선방안
▪ 타 우선구매제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기업으로서 종합적인 유효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의 공급실적을 축소시키거나 완전히 졸업(참여제한)시키는 방안 마련 * 예) 매출 최근 3년 연평균 100억 원 이상, 우선구매 수혜기간 7년 이상 초과한 경우 이후 공공부문 참여가능 규모는 연평균 매출액 50억 원 제한 * 창업초기기업 최대 인정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창업기업생존율 30%에 속한 기업으로 마중물 역할 수행효과 달성 ▪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제도라는 문제제기 시 공급실적 규모가 작은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참여기회 지속 방안도 검토 가능 * 예) 매출 최근 3년 연평균 100억 원 이상, 우선구매 수혜기간 7년 이상 초과한 경우 8년차 부터 전년도 공공조달 실적의 20%는 전년도 공급실적 하위 50%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공급(납품건당 20%를 공동수급체 구성 50% 기업에게 의무보장) * 하위 50%업체와 공동수급체는 무작위 추첨 배정(2회 이상 중복수혜 방지)

[그림 43]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공급실적 편중실태와 개선안

-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 가능한 대안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창업/설립 이후 기간)와 우선구매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공급실적의 축소 또는 우선구매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공급실적이 없거나 하위 기업들과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매실적 비율을 유지 상향시켜주는 참여공유제도이다.
- 예를 들어, 창업후기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0억원 우선구매실적을 달성한 경우 기본적으로 6~7년차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실적의 한계치는 전년도 공급실적의 15%를 한도(전년도 공급실적이 70억원인 경우 10.5억원)로 인정하고 이 경우 공급 가능한 금액은 60.5억원이 된다. 다만

전년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 하위 50%에 속하는 2개 이상의 기업/조합과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전년도 기준 실적인정 비율을 30%(앞선 사례 적용 시 21억원) 확대 인정하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한편, 창업/설립 7년을 초과한 기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공시장에서 민간 시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활동 영역을 확대 전환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우선구매제도 활용을 목적으로 신규 진입하는 신생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도 우선구매를 통한 공급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우선구매 참여제한제의 기본적 개념이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참여공유/제한제 개요

- 예를 들어, 창업/설립 후 7년을 초과한 사회적경제기업은 기본적으로 50억원 우선구매 공급실적을 초과할 수 없으나 민간시장에서 공급액이 전체 기업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창업후기 공급실적을 보장(이 경우 50억원이 아닌 60.5억원까지 공급 가능함)해 준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닌 강점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장점을 활용하여 전(全)산업 평균대비 고용유발효과가 30% 이상인 경우 창업 중기 우선구매 공급실적(이 경우 50억원이 아닌 67.5억원 공급 가능)을 보장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4.2. 소 결

- 본 장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활용 현황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8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첫째,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경로가 일반적인 계약방식이 아닌 비계약방식인 민간위탁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용역 등의 공급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차별적인 교육과 지원 등의 접근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둘째,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의 품질, 성능 및 기능 향상과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 고유의 품질관리/보증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응 할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품질관리/보증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 셋째,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존 우선구매대상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우선구매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우선구매자격에 대한 구매실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점에 대한 문제점 해소가 필요하다.
- 넷째, 평가기관별, 대상기관별로 서로 상이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 평가체계의 표준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다.
- 다섯째,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과 같이 법정 의무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이행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여섯째,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 활성화 수요조사에서 공급 가능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정보부족 현상 해소와 구매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 마련 요구가 식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를 통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정보 및 구매지원 포털 마련이 요구된다.
- 일곱째, 사회적경제기업과 타 우선구매제도의 수혜 중복도 현상 초래 요인 중 하나인 공급상품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영리기업 중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급하는 종이류, 문구류, 청소용역 등

에 한정되어 있어 기존 공급업체와의 레드오션식 과당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상품을 공급하더라도 손실을 보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물품과 용역, 특히 용역 중심의 상품의 개발과 공급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 여덟째, 사회적경제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창업 이후 공공구매를 통해 유효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까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타 우선구매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동일하게 공공조달 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급규모, 지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차등적으로 지원 수준을 조절하여 민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장. 결 론

5.1. 연구결과

- 본 연구를 통하여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구매를 활용하기 위한 주요 공급경로, 계약방법, 공급기회(규모, 금액 등) 등 정성 및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구매의 종합적인 실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이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공공구매 계약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의 주된 방법은 민간위탁 등 비계약적방법에서 입찰을 통한 계약방법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계약방법적 측면에서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전자적 구매방식인 공공기관의 수기계약이 사회적기업은 전체 계약건수의 15% 내외였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5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의 지원 실효성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모두 상위 10%의 공급실적 비중이 70%에 가까운 반면, 하위 50%는 약 5% 내외 수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공공구매 수혜효과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공급물품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전통산업의 저부가가치 물품인 종이류 등을 납품하고 있으나, 기존 유사 지원범주에 포함되는 장애인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단체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급확대를 위한 공급 물품과 용역의 다변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 부합도 향상이 요구된다.
-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과 서비스의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공급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를 활용한 공급경로는 공급실적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입찰에 의한 계약방법이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수기계약에

의한 공급 건수의 비중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요기관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와 공급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구매 수월성을 제고 요구가 많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자체적인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와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과 구매기관의 수요적합도 제고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공공구매제도 활용 목적으로 지속적인 공공조달 참여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 활용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조달업체 등록과정의 어려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 보수적인 구매 관행으로 검증된 기존 공급자 선호 현상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취득 이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복수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회 확보 측면에서 수의계약 가능성과 공공기관의 요구로 인해, 부담이 되더라도 복수의 인증 및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등 정량적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제도 활용을 통한 정책 목적 및 취지 구현과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는 민간영역으로 확장하는 발전적 성장전략보다는 공공조달을 통한 물품 및 용역 공급전략 채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공공구매의 계획과 실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 및 경영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실적을 활용하여 달성도 등에 따른 평점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 현재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연도별 기관 경영평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공공구매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이 되는 공공구매실적 산정기준이 물품+용역, 물품+용역+공사 등으로 달라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도 이후 소관 부처별 평가제도가 통일되었으나, 통일된 기준을 살펴본 결과 평가지표에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공공구매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구매실적 만점기준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7%로 범위가 매우 넓어 평가결과의 비교가능성과 타당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대부분 세부평가방법에서 전년도 기준 당해연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 증가율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간 구매규모, 물품 및 용역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련하여 평가대상기관 역시 사회적경제기업 범주 내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다양하여 우선구매실적 편차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간 우선구매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최근 3년간 공공구매실적 계약자료 분석,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요-공급 특성 설문조사,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실적 활용 공공기관평가지표 활용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8가지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공공구매 경로별 차별적 구매지원 및 교육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통한 판로지원은 기본적으로 입찰 및 계약의 방법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물론 2016년 이후 용역부분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형태의 비계약적 방법을 통한 접근법도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질적/양적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 둘째, 사회적경제기업 공급역량(품질/성능)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로 공급하는 물품은 종이류, 문구류, 화장지 등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상품이면서 기존 타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들의 공급품목과 겹치게 된다. 또한 일반 영리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수요가 높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주로 공급하는 품목들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영리기업과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존 공급업체 대비 사회적경제가 품질 및 성능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적경제기업 간에도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 공급 역량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따라

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한 품질과 성능의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제3자가 인증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급제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공급역량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셋째, 복수우선구매자격 사회적경제기업 실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법정강제인증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등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이전부터 안정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원 제도이다.
-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는 이들 우선구매제도의 시행이후 도입된 제도로 공급역량 관점에서 수준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우선구매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이외에 선행적으로 운영되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타 우선구매제도에서 요구하는 법정구매목표비율 충족이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을 복수로 취득하여 납품 요구하고 있고 각 우선구매제도 관리 소관부처에서는 이와 같은 한 번의 구매실적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 중 금액기준으로 약 20%에 달하는 공급실적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여성기업 등 타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이외 복수의 우선구매자격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단일 구매실적을 이중, 삼중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전 설정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감액인정하거나 복수 인증자격 중 공급업체 또는 수요기관이 선정하는 특정 우선구매 실적으로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넷째, 우선구매실적 평가지표 표준화 및 고도화를 통해 평가체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달성 수준에 따라 연도별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고유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부여하여 우선구매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업무평가(중앙행정기관 대상), 자치단체합동평가(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대상), 경영평가(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지방공기업 평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을 통한 공사, 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 평가(중앙 행정기관별 소관 기타 공공기관 대상) 제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수준에 따른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비중 및 평점기준 등이 모두 상이하여 평가체계로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부분 일자리창출 또는 법정강제 타우선구매제도(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등) 실적은 평가하면서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기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달성도에 대한 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실적인정 대상 및 범위, 평가산식 등), 배점 및 평점 등을 표준화하여 단일 평가체계를 도출하여 모든 평가제도(기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 다섯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의 적정규모 확보를 위한 법정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입법화 추진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와 유사한 지원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경우 총 구매액의 4%(물품/용역 5%, 공사 3%), 장애인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의 경우 각각 총 구매액의 1%(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의 경우 공사 구매액 제외)를 권고గా 아닌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다.
-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법령상 우선구매제도 운영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구매목표비율을 수치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총 구매액 기준 3% 내외 수준을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에서 달성토록 요구하고 자치단체합동평가에서는 총 구매액의 7%(실적인정 대상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이외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3~4% 수준으로 볼 수 있음)를 구매실적 달성도의 만점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 따라서 타우선구매제도의 법정구매목표비율 충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구매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적정 구매규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제도의 정책적 달성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의 적정공급 규모와 이를 법정구매목표비율로 반영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산정기준은 2018년 9월말 기준 2,030개의 사회적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4만4250명과 관련한 고용유발계수 구현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고용유발 인원 중 대다수는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등으로 2만6970명(60.9%)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목적과 취지 달성 관점에서 적합도가 매우 높은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다.
- 다른 한편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성 관점에서 2017년 기준 사회적기업의 흑자비율이 55.2%로 2016년도 대비 5%p 이상 늘어나는 등의 성장성 지표도 효과적인 기준 중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 여섯째,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구매지원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요인으로 우수한 공급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 목록과 이들 기업들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을 언급하고 있다.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과정에서 수월성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구매지원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발표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공공조달 및 판로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종합쇼핑몰(SEPP)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e-store 365’의 확대 개편과 사회적경제 종합쇼핑몰로 새롭게 구축되는 SEPP 역시 효과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보다 편리한 구매기능(e-store 36.5+ 기능 확대 등)에 치우친 점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일곱째, 사회적경제기업이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사회적경제 특성에 부합하는 적합도를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 우선구매를 통해 공급하는 주요 물품은 종이류, 문구류, 화장지류 등이며 용역 역시 청소, 인쇄 등과 같은 상대적 저부가가치 상품이며 타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 기업과 단체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등과 치열한 경쟁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육, 문화, 사회복지 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과 연계한 전문성이 높거나 사회적 가치 구현도가 높은 용역 중심의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현재 기존 공급자와의 경쟁강도가 심하면서 저부가가치 물품 중심보다는 사회적가치 구현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용역 중심으로 공급구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주된 우선구매 공급경로는 계약의 방식보다는 비계약방식으로서 민간위탁, 운영사업자 공모 등의 방식이 우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 여덟째, 사회적경제기업 단계적 성장을 통한 “창업/설립 - 판로지원 - 경영/운영 안정성 확보 -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고 발전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타 우선구매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주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지원 방법인 우선구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창업초기에 있는 정책지원 대상(기업, 조합 및 단체 등)에게 경영안정성 확보를 통해 민간시장 등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유효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그러나 실제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지원 대상의 대다수는 현실적으로 민간시장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로 인해 공공조달 시장에 장기적으로 안주하는 경향이 크다. 본 연구에서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약 80% 이상이 향후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전략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기반한 물품과 서비스의 공급 역량 확대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경제 영역이 공공(1섹터)과 민간(2섹터) 어느 영역에도 명확하지 않거나 교집합적 영역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일정부분 공공부문에 기반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

-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설립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도 자생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의 공급비중을 확대하는 전환적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발전적이고 선순환적인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활용에 있어 공급기회의 공유 및 일정비율(매출액 기준 등) 이상에 대한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최근 4년간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계약실적자료 분석을 통하여 상위 10%에 속한 기업들이 전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공급금액의 70% 이상을 독과점으로 공급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 반면, 우선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약 50%는 전체 우선구매 공급금액의 약 3% 수준만 참여하고 있어 공급구조의 편중 및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인증 사회적경제기업 중 공공조달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이 약 60%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기업의 약 75%는 사실상 현행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도의 정책적 지원의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 중 상대적으로 역량이 우수하고 공급규모가 충분한 경우에는 창업이후 성장단계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급금액 초과 시 공급실적 기준 하위 50%에 속한 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참여를 의무화하는 참여공유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설립 초기 7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일정수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는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일정수준 민간시장 참여를 의무화하는 참여 제한제도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향후 연구방향

- 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우선구매 과정에서 공급현황과 특성을 식별하고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구매방법, 주요 구매물품과 서비스, 개선요구 사항 등 수요현황과 특성을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도출되었다.
- 그러나 본 연구의 기본적 목적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한 정확한 현황과악에 중점을 두고있어, 일부 개선방안의 경우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요구 중 사회적경제기업 및 공급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성능 보증 및 관리체계와 관련된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기준 도출이 요구된다.
- 둘째, 타 우선구매제도 활용 가능 자격(인증)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공급실적에 대한 차등적 인정 방안 역시 실제 적용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적인정 할인율과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획득 전후 시점에서 차등적 인정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서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달성 수준 등에 따라 기관평가 시 반영되는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및 평점방법 등에 대한 표준평가체계 역시 기관별 수요 물품과 서비스 특성과 절대 구매규모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 넷째,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우선구매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 구매규모 산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총 구매액 대비 구매목표비율 설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타 우선구매제도에 등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선순환적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참여공유제와 제한제의 상세한 적용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연구수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선구매 참여공유제와 제한제의 경우 도입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광주광역시(2014), 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광주NGO시민재단
국회사무처(2013), 신 경제 활력을 위한 협동조합 연구
금성근, 이정석(201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방
안, 부산발전연구원.
기획재정부(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일자리 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김성균(2014),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영역과 그 특징에 관한 연
구, 한국NGO학회 9(1)
김성기(2014),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와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의 이슈,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김성기·김정원외(2014),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전망, 아르케
김정현(2014), 사회적 기업의 인증이 고용 및 사회복지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
향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4)
김종선외(2015), 사회적 경제의 혁신적 향상 방안 :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원시(2016), 수원시 사회적 경제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수원시정연구원

<영문 자료>

- Jeong, B. (2013). Accountability in south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s:
stakeholder
expectations as perceived by nonprofit lead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Salamon, L. M. (2003). The resilient sector: The state of nonprofit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Salamon, L. M. (2012). The state of nonprofit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The South Korean NPO Council, & The UNICEF Korean Committee.
(2011). 2010 White Paper on South Korean Government Support to
Nonprofit Organizations. Seoul: The South Korean NPO Council& The
UNICEF Korean Committee

[붙임 1]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설문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조달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정책지원 대상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급특성과 공공기관의 수요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공공조달을 활용한 사회적가치 구현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가치 구현은 **공공과 민간부문이 담당해야 할 교집합적 영역인 제3섹터의 다양한 국가사회적 문제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설문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적 효과 발현의 주체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본 설문조사에서 언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함께 명명**한 용어입니다.
- 설문조사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연구목적 이외에 활용되지 아니하며, 응답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작성된 설문지(온라인 설문 웹페이지 활용 시 직접 입력)는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의 **김혜민 연구원(hyeming07@kip.re.kr) 이메일 또는 팩스로 10월 31일(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관한 문의는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00일



* 담당자 연락처

(재)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이상훈(02-796-8234(내선500))

▪ 담당자 : 연구원 김혜민 / 부연구위원 박희택 ▪ 연락처 : 02-796-8234(내선557번/55

▪ e-mail : hyeming07@kip.re.kr/htpark@kip.re.kr ▪ FAX : 02-796-8235

1.

사회적경제기업 및 응답자의 일반현황 조사

본 장은 설문에 응답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응답자의 일반정보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부정책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본 조사에서 언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1. 귀하가 근무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① 사회적기업 ② 사회적협동조합 ③ 마을기업
④ 자활기업 ⑤ 기타()

2. 귀하의 현재 직급은 무엇입니까? ()

- ① 사원(급) ② 주임/대리(급) ③ 과장/차장(급)
④ 팀장(급) ⑤ 부장(급) ⑥ 임원/대표(급)

3. 귀하의 현재 담당업무는 무엇입니까? ()

- ① 인사/행정 ② 회계, 재무 ③ 생산 ④ 영업
⑤ 구매 ⑥ 기술개발/연구 ⑦ 기타

4. 귀하의 근무기간은 얼마입니까? ()

-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4년 미만 ③ 4년 이상~6년 미만
④ 6년 이상~8년 미만 ⑤ 8년 이상 ~ 10년 미만 ⑥ 10년 이상

5. 귀사의 설립 연수는 얼마입니까? ()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7년 미만 ⑤ 7년 미만~10년 이상 ⑥ 10년 이상

6.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4대 보험 가입자 기준)는 어떻게 됩니까? ()

- ① 3인 이하 ② 5인 이하 ③ 10인 이하
④ 20인 이하 ⑤ 30인 이하 ⑥ 30인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합 상근 근로자 기준 응답**

7. 귀사의 매출액(2017년 기준)은 얼마입니까? ()

- | | | | |
|--------------------|---------------------|---------------------|-------------------|
| ① 5천만원미만 | ②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③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④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 ①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②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③ 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④ 20억원 이상 |

8. 귀사가 주로 공급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품명은 무엇입니까?

물품/서비스명 : _____

9. 귀사는 정부 및 지사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설립지원, 사업운영, 판로지원, 자금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지원사업명 : _____) ② 없다

* “① 있다”로 응답한 경우 지원사업명을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2.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용현황 조사

본 장은 귀사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본 조사에서 언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1. 현재 귀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여 물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물품/서비스명 : _____) ② 없다

2. 귀사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기 이전과 이후로 매출액 증가 또는 사업규모 확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매출액/사업규모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사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가 사회적가치 구현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10점 척도)

구분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사회적가치 구현 연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귀사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공조달 공급실적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① 5% 미만 ② 5%이상 ~ 10% 미만 ③ 10%이상 ~ 15% 미만
 ④ 15%이상 ~ 20% 미만 ⑤ 20%이상 ~ 25% 미만 ⑥ 25%이상 ~ 30% 미만
 ⑥ 30%이상 ~ 35% 미만 ⑧ 35%이상 ~ 40% 미만 ⑨ 40% 이상

5. 귀사에서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가 유사한 우선구매대상인 여성 및 장애인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가 공급하는 상품 대비 기술 및 품질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점 척도)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에서 총구매액은 공공기관별 물품 및 용역 구매금액의 합계금액이 구매실적 산정의 기준임.

3.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개선 소요 조사

본 장은 귀사의 물품 및 서비스를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급 경험에 기반하여 제도적 개선 및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본 조사에서 언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1. 귀사가 조달업체로 등록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 ④ 5년 이상~7년 미만 ⑤ 7년 이상~10년 미만 ⑥ 10년 이상 ~ 12년 미만
- ⑦ 12년 이상

2. 귀사가 최근 3년간 공공분야에서 조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물품과 서비스의 연평균 공급실적은 얼마입니까?()

- ① 2천만원 미만 ②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③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④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⑤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⑥ 5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 ⑦ 7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⑧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⑨ 15억원 이상

3.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 우선구매대상 인증(자격)은 무엇입니까?(복수선택 가능)
()

- ① 여성기업 ② 장애인기업 ③ 기술개발제품기업*
- ④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⑤ 보훈복지단체 ⑥ 녹색제품
- ⑦ 기타 ()

* NEP, NET, EPC, GS, 환경마크, 우수제품 인증보유 등)

－신제품인증(New Excellent Product, NEP) / 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NET)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EPC), 우수소프트웨어(Good Software, GS)

4. 상기 3번 문항에서 선택한 타 우선구매대상 인증(자격)은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을 기준으로 전후 언제 확보하였습니까? ()

- ①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이전 ②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이후 ③ 전후 혼재

5. 상기 3번 문항에서 선택한 복수의 우선구매제도 자격을 보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 ① 수의계약 가능성 향상 ② 공공기관의 선호 및 요구
③ 대외적 신인도 제고 ④ 기타 ()

6. 귀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구현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7. 귀하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여 물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주요한 활용 이유 및 장점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복수선택 가능)
()

- ① 민간시장 대비 거래의 공정성 및 신뢰성 보장
②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한 일정수준의 물품 및 서비스 공급시장 확보
③ 안정적 수요 확보로 기업과 조합의 지속 가능성 제고
④ 기업과 조합 설립 초기 경영안정성 확보 및 중장기적 유효경쟁력 강화
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
⑥ 민간시장 대비 공급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대가 보장
⑦ 기타의견 : ()

8. 귀하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체감하는 주요한 애로사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선택 가능)
()

- ① 설립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조달업체 등록 어려움
② 공급 물품/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 어려움
③ 유사 우선구매대상(여성, 장애인기업 등) 기업과의 경쟁(구매실적 허수발생 등)
④ 공공(수요)기관 담당자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
⑤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제도와 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
⑥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영리기업과의 경쟁열위(가격, 품질 등 공급역량)
⑦ 공공기관의 무리한 계약조건 요구(과도한 추가공급 및 사후관리 요구 등)
⑧ 수요기관의 보수적 거래관행(검증된 물품/서비스와 신인도를 갖춘 공급자 선호)
⑨ 물품/서비스 공급 비용 대비 지급대가(계약금액) 부족

- ⑩ 공공기관에 의한 대금지급 지연
- ⑪ 사회적경제기업 중 역량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업체 난립
- ⑫ 경합되는 기존 제품·서비스 공급 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부규제
- ⑬ 공급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하자보증 등 사후관리 부담

9. 귀사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성능(기능), 품질 및 종합적 만족도 측면에서 공공(수요)기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10점 척도)

항 목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귀사가 현재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가 타 공급업체의 유사 상품 대비 성능(기능) 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사가 현재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가 타 공급업체의 유사 상품 대비 품질 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사가 현재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체감하는 만족도 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1점부터 10점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붙임 2] 공공기관 대상 실태조사 설문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조달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의무구매대상 **공공(수요)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급특성과 공공기관의 수요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공공조달을 활용한 사회적가치 구현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가치 구현은 **공공과 민간부문이 담당해야 할 교집합적 영역인 제3섹터의 다양한 국가사회적 문제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설문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적 효과 발현의 주체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조사에서 언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함께** 명명한 용어임.

○ 설문조사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연구목적 이외에 활용되지 아니하며, 응답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작성된 설문지(온라인 설문 웹페이지 활용시 직접 입력)는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의 **김혜민 연구원(hyeming07@kip.re.kr) 이메일 또는 팩스로 10월 31일(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관한 문의는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00일



* 담당자 연락처

(재)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이상훈(02-796-8234(내선500))

▪ 담당자 : 연구원 김혜민 / 부연구위원 박희택 ▪ 연락처 : 02-796-8234(내선557번/55

▪ e-mail : hyeming07@kip.re.kr/htpark@kip.re.kr ▪ FAX : 02-796-8235

1. 공공기관 응답자의 일반현황 조사

본 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와 관련된 실무 및 계약부서의 담당자의 일반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본 조사에서 언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1. 귀하의 소속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
| ① 국가기관 | ② 광역자치단체 | ③ 기초자치단체 |
| ④ 교육청(산하기관 포함) | ⑤ 국·공립학교 | ⑥ 공기업 |
| ⑦ 준정부기관 | ⑧ 기타공공기관 | ⑨ 지방공기업 |
| ⑩ 지방의료원 | ⑪ 기타법인 | |

2. 귀하의 현재 직급은 무엇입니까? ()

- | | | |
|------------|------------|-----------------|
| ① 사원(급) | ② 주임/대리(급) | ③ 주임/대리(급) |
| ④ 과장/차장(급) | ⑤ 부장(급) | ⑥ 처실장/임원(급) |
| ⑦ 주무관 | ⑧ 사무관 | ⑨ 서기관(이상 직급 포함) |

3. 귀하의 근무기간은 얼마입니까? ()

- | | |
|-----------------|----------------|
| ① 3년 미만 | ② 3년 이상~5년 미만 |
| ③ 5년 이상~7년 미만 | ④ 7년 이상~10년 미만 |
| ⑤ 10년 이상~15년 미만 | ⑥ 15년 이상 |

4. 귀하의 담당업무는 무엇입니까? ()

- ① 인사/행정/총무 ② 회계/재무 ③ 계약(물품/용역/시설공사)
④ 기술개발/연구 ⑤ 기타 ()

5. 귀하가 계약분야에 근무하신다면 해당 계약은 어떤 유형입니까? ()

- ① 물품 ② 용역 ③ 시설공사

2.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현황 및 관련 개선 소요 조사

본 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운영 현황 및 구매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본 조사에서 언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1. 귀하의 소속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중앙조달(조달청 요청)을 통해 구매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물품/서비스명 :) ② 없다

2.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구매하십니까? ()

- ① 물품 또는 용역 계약(입찰,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등)
② 민간위탁(별도 법령 및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자 공모방식)
③ 소액구매(3백만원 ~ 5백만원 이하 등 기관별 사전설정된 구매 가능 금액)
④ 소속 기관에서 발주한 타 사업(물품, 용역 및 시설공사)의 이행에 소요되는
물품과 서비스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토록 요구(타 사업 수행 업체 또는 단체)
⑤ 기타 ()

3.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입찰 및 계약의 방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주로 선택하는 경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경쟁

② 제한경쟁

③ 지명경쟁

④ 수의계약

4.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주로 적용하는 입찰규모(추정가격)는 무엇입니까? ()

① 2천만원 이하

②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③ 5천만원 이상

5.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향후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 확대를 위해,
주로 활용할 경로는 무엇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 물품 또는 용역 계약(입찰,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등)

② 민간위탁(별도 법령 및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자 공모방식)

③ 소액구매(3백만원 ~ 5백만원 이하 등 기관별 사전설정된 구매 가능 금액)

④ 소속 기관에서 발주한 타 사업(물품, 용역 및 시설공사)의 이행에 소요되는

물품과 서비스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토록 요구(타 사업 수행 업체 또는 단체)

⑤ 기타 ()

6.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간 사회경제기업으로부터의 연평균 구매액은 얼마입니까?

()

① 2천만원 미만

②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③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④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⑤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⑥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⑦ 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⑧ 20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⑨ 25억원 이상

7.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우수한 품질

② 뛰어난 성능/기능

③ 합리적인 가격(가격 대비 우월한 성능)

④ 우수한 A/S 및 고객관리

⑤ 기관평가 인센티브

⑥ 복수 우선구매(여성 장애인기업 등) 자격 보유

⑦ 사회적가치 구현도

⑧ 기타 ()

8.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우수한 공급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부족
-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급역량(납기, 품질 미흡 등) 부족
- ③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조달/계약절차 이해 부족
- ④ 타 우선구매 지원대상 기업과 단체로부터의 형평성 민원제기 및 갈등
- ⑤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 ⑥ A/S 및 고객응대 체계 미흡
- ⑦ 편리한 구매방법(사회적경제기업 전용 구매쇼핑몰 등) 부족
- ⑧ 기타 ()

9.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유사한 우선구매 지원대상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단체 등과 비교하여 공급자로서 상대적인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적가치 구현
-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부정책 기여
- ③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경제적 기여도
- ④ 적정한 인건비 지급 보장
- ⑤ 지속가능한 운영구조
- ⑥ 신속한 고객응대 및 사후관리 체계
- ⑦ 기타 ()

10. 향후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구매 확대계획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서비스명 : ()

11. 귀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법적 강제 구매목표비율제도
- ② 객관적인 사회적가치 구현 수준 평가 및 공시

- ③ 공급 물품/서비스의 품질, 성능 향상 및 보증체계
- ④ 수요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적합도 높은 물품/서비스 공급
- ⑤ 신속한 고객응대 및 사후관리 체계 확보
- ⑥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유한 물품과 서비스 개발 및 공급
- ⑦ 기관평가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 평가비중 확대
- ⑧ 기타 ()

12.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생각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및 서비스 적정 구매규모는 얼마입니까? ()

- ① 총구매액*의 0.5% 미만 ② 0.5%이상~1%미만 ③ 1%이상~2%미만 ④ 2%이상~3%미만
- ④ 3%이상~4%미만 ⑤ 4%이상~5%미만 ⑥ 5%이상

*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에서 총구매액은 공공기관별 물품 및 용역 구매금액의 합계금액이 구매실적 산정의 기준임.

13. 귀하의 소속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성능(기능), 품질 및 종합적 만족도 측면에서 소속기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10점 척도)

항 목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1) 귀하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구매한 물품과 서비스의 성능 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구매한 물품과 서비스의 품질 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구매한 물품과 서비스의 종합적 만족도 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1점부터 10점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및 보완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에 응답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